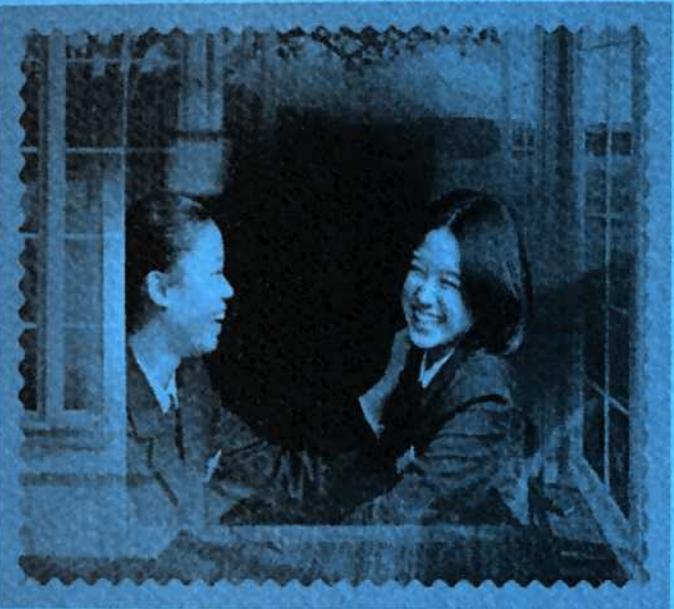


행복한 삶의 운동 !! 학교를 건강하고

학교폭력과 청소년건강



일시 : 2004년 4월 22일 (목)
장소 : 서울명동 미지센터

주최 :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
후원 :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청소년 문화교류센터



행복한 삶의 운동 !! 학교를 건강하고

학교폭력과 청소년건강



일시 : 2004년 4월 22일 (목)
장소 : 서울명동 미지센터

주최 :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
후원 :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청소년 문화교류센터



일정표

3:00 ~ 3:20 등록

3:20 ~ 3:35 인사말

3:35 ~ 4:25 김현수

(사는 기쁨 원장, 대안학교 별교장)

4:25 ~ 4:55 김대유

(학교폭력대책 국민 협의 상임대표)

4:55 ~ 5:20 우옥영

(건강사회보건교육연대 대표)

5:20 ~ 토론회

자료집 순서

<발제 1>

학교폭력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	1
따돌림 예방을 위한 “왕따 없따 school program”	8

김 현 수 (정신과 전문의, 사는 기쁨 신경정신과,

대한청소년 정신의학회 홍보부)

<발제 2>

참여와 자치로 풀어가야 할 ‘왕따’(wang-ta)문제.....	35
-------------------------------------	----

김 대 유 (교사, 학교폭력대책 국민 협의 상임대표)

<발제 3>

학교 폭력과 보건교사	50
-------------------	----

우 옥 영 (교사,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 연구회 회장)

학교폭력과 청소년 정신건강
학교폭력,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



김 현 수 (정신과 전문의, 사는 기쁨 신경정신과,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홍보부)

“나는 영원히 잊을 수 없다, 그 나날들을
월요일 : 용돈을 빼앗겼다
화요일 : 별명을 불리우며 놀림을 당했다
수요일 : 내 웃음을 찢었다.
목요일 : 코피가 났다
금요일 : 가방을 한참 뒤에 찾았다
토요일 : 월요일 용돈을 협박당했다
일요일 : 차라리 내일 학교를 가느니 지금 죽어버려야겠다”
- 13세, 왕따를 받던 중 자살한 아이의 일기 중에서

평하게 해결을 해주어 학교와 사회가 안전한 학습과 성장의 장소임을 각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의 자연스런 갈등에 의해 발생하는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집단적이며, 고안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당하는 개인이 대처하기에 쉽지 않으며 개인적 대처는 학생들을 더욱 무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몇 해전에 발생했던 교실 내 살인 사건은 결국 이런 무력함을 철저히 느끼던 학생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보복으로 치달았던 비극적 결과였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개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급 전체, 학교 전체, 관련 학생들의 가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학교폭력으로 이사를 고려하는 가족들, 학교폭력과 지역사회 폭력과의 연관 등을 고려하면 학교폭력은 학교 자체만의 문제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2. 신속한 처리와 공평한 운영 : 피해자가 억울해져서는 안된다.

1. 확고한 통념과 원칙의 변화 : 학교폭력, 학생들의 장난이 아니다.

여전히 학교폭력이 ‘학생들 사이의 장난’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미 잔혹한 많은 사건의 결과들을 무수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통념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더더욱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작년에 가까스로 통과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을 통해 이런 통념이 학교와 사회 현장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는 임상 현장에서 왕따를 포함한 학교폭력을 통하여, 혹은 학교폭력이 계기가 되어 인생 전체가 왜곡되거나 좌절되는 상황, 죽음에 이르는 비극을 경험하여 왔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하여 일부의 학생들에게 학교는 가해현장이며, 학교가 전쟁터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은 매일 승리가 보이지 않는 전장에 끌려가는 패잔병같은 기분으로 잔혹한 학교전장에서 쓰러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 (1) 학교폭력은 명백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하나의 범죄적 사건이라는 것
- (2) 학교폭력은 단지 학생들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
- (3) 학교폭력은 단지 학생들의 갈등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는 것
- (4) 학교폭력은 단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일본과 영국을 비롯한 기타 많은 국가들은 학교폭력 즉 ‘힘의 우위를 갖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반복적이고 지속적, 의도적으로 상처나 가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위’를 법 혹은 규칙으로 제재하고 있음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교와 사회는 학생들에게 가해와 피해를 명백히 밝혀주고 공

현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피해학생과 그 부모들을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희망되어지는 것은 학교폭력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범죄적 사건이 분명하다고 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대처가 분명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상식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 (1) 피해학생에게는 확고한 안전과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 (2) 가해학생에게는 가해행위에 대한 처분과 더불어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많은 현실은 피해학생이 다시 재 피해를 받고 불리한 영향을 받으며 거기마다 정신적 장애까지 얻게 되는 반면 가해학생들은 가벼운 처벌과 더불어 학교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피해학생이 설혹 다소의 유발적 요인이 있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해도 피해학생이 그것을 학교에서 동료들로부터 조직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놀림 받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가해학생이 학생이고 개인적으로 혹여 선량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의 가해행동에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가해자도 피해자라는 인식이 부각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서 가해자는 분명 가해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전체 학교와 사회제도의 책임으로 보았을 때 제도의 피해자이거나 학교 교육의 피해자이라는 논리는 분명한 처벌과 조치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피해자 중심의 확고한 원칙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고 이 법의 존재근거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예방적 차원에서는 의미를 갖을 수 있겠지만 그

것이 피해학생의 피해사실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와 지원은 매우 한계가 많습니다. 개인적 노력은 때로 피해학생에게 자신에게 내적 요인의 소재가 있다는 근거를 갖게 하기도 합니다. 피해학생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들을 학교나 상담실 혹은 가정에서 반복해서 듣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용기를 내라”, “극복해라”, “사회성을 길러라” 등의 이야기는 가해학생과 동일한 비난의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피해학생에게 자기존중감이 낮고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단이 낮고 가정내 양육의 문제를 제기하지만 이는 인과관계로 성립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피해학생의 피해의 결과로 갖게 된 요인들이라는 점을 배제하기 어려운 결과들입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가해학생들의 변명을 합리화하는데 이용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3. 학교폭력과 정신건강 :

학교폭력의 심각한 피해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모른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손상을 동반하든 동반하지 않든 간에 피해학생에게는 심각한 인격적 손상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손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보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면접조사와 심층 상담에 의한 조사보다는 설문지에 의해 조사된 연구가 많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건강 상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희생자들이 정신병에 발병될 위험이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돌림 척도가 높은 학생 중 정신병적 증상이 높은 정도가 따돌림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편집증도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사례연구의 보고에 따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증, 품행 장애 등이 이환되어 정상적 학교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왕따를 당했던 학생들이 경험하는 우울과 불안, 분노의 증가는 다수 연구에서 보고 된바 있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시 이에 대한 보호인자와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보호인자로는 가족관계가 주로 추출되고 있으며 위험인자로는 부정적인 자기개념, 사회기술의 부재와 같은 인자가 보고 된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이후 학교적응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우울감과 외로움이 높아지고 자신감을 상실하며 집중력과 학습 성취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여럿 보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외국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포함)는 학교폭력 이후 가장 흔히 경험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는 실제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사례를 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심각한 피해학생들의 다수가 학교 현장을 떠남으로 인해 학교에 기반한 연구에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정신보건 문제와 학교폭력의 제도적 대응, 학교차원에서의 효과적 대응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후 학교측 대응의 무기력함 혹은 학생지도 능력의 결여는 곧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질환의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연구 상의 한계가 되고 있는 것은 학교폭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그나마 연구보고가 되고 있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들이 이후 어떤 경로를 통해 적응 혹은 좌절, 질병이환 등의 상태에 이르는지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를 신문과 방송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들의 유서와 자살을 통해 심각성을 전해 받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폭력의 피해를 사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포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1) 학교폭력의 피해와 그 정도는 심리적 손상, 인격적 손상, 학교적응에의 손상을 중심으로 하여 강조되어져야 합니다.
- (2) 학교폭력 피해 이후 피해학생이 겪는 전생애적 손상과 장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이에 따른 피해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4. 학교폭력과 정신보건, 보건교사

학교폭력에 대한 개입은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 사건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 (1) 예방적 개입
- (2) 사건의 위기개입 및 중재적 개입,
- (3) 사건 이후의 치료적 개입으로 나누어 개입될 수 있습니다.

* 개입의 범위에 따라

- (1) 개인적 차원에서,
- (2) 학급차원에서,
- (3) 전학교적 차원에서 개입될 수도 있습니다.

* 사건의 대상에 따라

- (1) 피해학생 개입
- (2) 가해학생 개입
- (3) 피해-가해학생 동시 개입
- (4)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학생

각각의 접근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도 있고 제도적으로 접근방법을 정해놓은 국가

나 주 단위의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 상당수는 정신보건인력들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학교폭력에 대한 정신 보건적 접근 :

학교폭력에는 학교 상담교사, 보건교사와 같은 학교 내 인력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경찰 등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정신 보건적 개입을 위해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것만 50여개가 넘습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갈등해결 교수법 같은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지지되고 있지만 각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에서의 보건교사 역할에 대한 논의

(1) 학교폭력이 신체폭력을 동반하여 신체적 증상에 대한 조치를 필요로 할 때 보건교사의 역할이 필요로 됩니다. 피해-가해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학교 내 의료진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교사는 피해상황과 가해상황에 대한 의료적 기록을 작성하여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송사를 진행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되며, 의료적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윤리적 차원에서도 의미를 갖습니다.

(2) 학교폭력이 심리적 폭력으로 전개될 때도 모호한 신체적 손상을 호소하며 보건교사를 접촉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 내 보건교사는 은폐되거나 위장된 학교폭력 피해상황을 발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내 보건교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체적 상태나 심리적 호소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상황이 발견되었을 시 학교에 고지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3)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 보건적 활동을 학교 내 보건교사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학교폭력 상담자를 배치할 때 자치구에 따라 훈련된 보건교사를 2인 배치하거나 상담 심리전문가 1인을 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개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기술에 대해 보건교사가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대처하는 위기개입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건교사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되는 학교내외의 폭력예방, 폭력개입 프로그램의 흐름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 수행업무에 대한 대처과정 등에 대한 규정

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무순)

-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한 검토 : 2004.4 교육인적자원부
- ◎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정신의학적 후유증에 관한 사례연구(1997) : 송동호 육기환, 이호분, 노경선.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지 8권 2호 232-241
- ◎ 초등학생에서 집단따돌림의 유병률과 이와 관련된 정신병리현상 (2001) : 김영신등, 신경정신의학회지 40권 5호 876-884
- ◎ 집단따돌림 피해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관련된 위험인자와 보호인자 (2001) : 안정숙, 신승우, 신경정신의학회지 40권 6호 1166-1173
- ◎ 학교폭력 피해자의 정신병 실태조사 (2000) : 신성웅, 권석우, 신민섭, 조수철,
- ◎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지 11권 1호 124-143
- ◎ 학교폭력 피해자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2003) :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박경아
- ◎ Hawker, D. S. & Boulton, M. J. (2000). Twenty years' research on peer victimization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 a meta-analytic review of cross-sectional studies. *Journal of Child Psychol Psychiatry*, 41(4), 441-445.
- ◎ Rutter M., Taylor, E. & Hersov, M., (1994).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 modern approaches*. 3rd ed. Oxford: Blackwell Science.
- ◎ Dawkins, J. (1995). Bullying in schools : doctor's responsibilities. *British Medical Journal*, 22(310), 1055-1066.

‘없따 school’ Program Manual

따돌림 예방을 위한 “왕따 없따 school program”

왕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왕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왕따라는 말은 어떤 행동에 있어서 제한을 할 때나 하거나 농담 시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어로 사용할 정도로 학생들부터 일반인들에게 익숙하게 되었다. ‘집단 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이 단어에 대해, 상담을 하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왕따’라는 용어 사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용어로 학생들은 흔히 ‘따돌림’, ‘괴롭힘’, ‘전따’, ‘은따’, 일부 학생들의 경우 왕따 당하는 학생들끼리 다니면 ‘개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언어적, 신체적, 심리적인 것일 수 있으며, 괴롭힘은 자신들의 목적이나 만족을 위해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열등감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공격할 때뿐만 아니라, 미래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반복적 공격이고 괴롭힘은 약자에 대한 강자의 강력한 우위로 특징지어진다고 한다(집단괴롭힘)

여기서는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동에 대해 왕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왕따는 왕따를 당하는 피해자 가족조차도 피해 상황을 알지 못하게 은밀히 이루어지거나 공공연하게 왕따상황을 발견할 정도로 우리의 체감수준보다 훨씬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왕따 문제에 대한 개입은 피해학생 뿐 아니라 피해 학생의 가족과 가해자, 학교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왕따를 당하는 피해 학생들을 보면 신체적으로 허약하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급한 성격, 얼굴 표정이나 외모, 누가 친구였는지, 입고 있던 옷, 사회생활기술의 부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Strategies to help solve our school dropout problem), 왕따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을 통해 인기 없는 아이들의 특성에 자신이 해당되는 항목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 자신감이 부족하고 불안해하며 수다스럽다. 자랑을 많이

하고 잘난 척한다. 사소한 일에서 성질을 부리며 폭발적인 성격을 지녔다. 외모가 단정하지 못하고 유행에 둔감하다. 민감성이 부족하여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한다. 수줍음을 많이 타고 적극성이 떨어진다. 불필요하게 주의를 끌려고 노력한다. 또래들을 욕하고 놀리며 위협함으로서 자신감을 찾으려고 한다. 남의 탓을 많이 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꺼린다. 등

또한 왕따를 가하는 가해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가해자들은 신체적으로 강하며 다른 집단보다 힘과 자신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들의 공격이 동료에 의해 목격될 수 있는 상황을 물색하여 갈등과 공격을 가하며 이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며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남을 괴롭히는 수단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다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 과장된 자랑, 고함지르기, 교직원에 대한 무례함, 또래와 교직원에 대한 거만함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상의 항목들은 왕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왕따를 당하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이 모두를 위한 개입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왕따를 예방하기 위한 개입은 왕따와 직접 관련이 있는 피해 학생 뿐 아니라 가해 학생, 왕따 상황 주변의 방관자나 동조자 그리고 가족들, 학교 차원의 포괄적이고 생태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이상의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왕따를 당한 피해 학생들의 예방적 개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왕따, 집단 따돌림은 따돌림에 대한 용어, 현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징, 대처 방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며 심리 정서적 상담부터 적절한 자기주장과 상황 대처 능력을 포함하는 사회 생활 기술 훈련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어 주어야 한다.

이에 프로그램은 전반부(1-5session)에는 따돌림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후반부(6-10session)에는 따돌림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처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적]

1. 아동 청소년들의 일상 생활 중, 특히 주 생활 공간인 학교에서의 또래 관계와 대인 관계를 증진하여 따돌림을 예방, 해결하고자 한다.
2. 각 아동별 자기 민감성을 증진하고 자기주장과 사회 생활 기술을 증진하여 따돌림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한다.

3. 따돌림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갈등과 분노를 다룰 수 있는 훈련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강화 한다.

[프로그램구성]

1. 프로그램 대상 : 따돌림 경험이 있는 아동 청소년 / 부모님들

2. 프로그램 내용 :

I. Orientation

1. 소개, 프로그램 전반 소개, 집단의 규칙 정하기

II. Main Program

PART 1] Education & Activity

2. 따돌림 교육 - 왕따에 대해 알아봅시다

3. 영상교육 및 토론

4. 독서치료 - 영대이야기 및 사례이야기

5. 왕따 극복을 위한 유형별 접근 - ROLE PLAY 및 토론

PART 2] SOCIAL SKILL TRAINING

6. 주장훈련 - 공격적, 수동적, 주장적

7. 의사소통기술 - Communication skill

8. 분노조절 - Anger Control

9. 도움 요청하기 - Help seeking

III. Evaluation

10. 왕따없는 학교가 되려면.. / 평가 및 정리

Session 1. Orientation

1. 세션개요 : 첫 세션에서는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이유와 성원들의 소개를 통해 서로를 파악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2. 내용 :

1) 진행자 소개 및 전체집단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2) 주요활동 : 자기 소개, 이름외우기 게임

3) 프로그램에서 기대하는 자기 목표

나는 _____한 ○○○입니다.

① 자신의 특징을 활용한 소개

우선, 진행자가 자기소개를 시범으로 보여줍니다. : 자신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문구를 넣어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 나는 축구를 잘하는 흥명보입니다. 이런 소개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특징이나 장점을 찾아보면서 동시에 자기소개를 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② 두번째는 형용사를 활용한 소개

이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 감정이라고 생각되는 형용사를 활용하여 소개하는 것은 감정탐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용사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경우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 나는 즐거운(행복한, 슬픈, 우울한 등) 김미나입니다.

③ 세번째는 이모티콘을 활용한 소개입니다. 이 방법은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상징적인 매체인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요 표정이라고 생각되는 이모티콘을 찾아 설명해 주는 방법입니다.

예) 나의 이모티콘은 :-) 입니다. 나는 주로 먹을 때 이런 표정을 가집니다.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이후 자기 소개 방법들 중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소개하고 나면, 성원들이 서로의 특징이나 감정 등에 대해 얼마나 알게 되었는지 특징을 기억하며 이름외우기 게임을 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원들을 소개합니다.

Session 2. 따돌림 교육

1. 세션 개요 : 소위 왕따로 불리는 집단따돌림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집단따돌림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이해하고 사용하는 '왕따'라는 용어에 대해 아이들의 입장에서 듣고 정확한 교육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내용 :

- 1) 왕따의 용어 정의하기 - 내가 생각하는 왕따란 ?
- 2) 왕따의 유형
- 3) 왕따의 원인

3. 교육 자료

1) 괴롭힘에 대하여

괴롭힘은 본질적으로 언어적, 신체적, 심리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불안을 끼치거나 또는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공격적인 행동양식의 정의에 들어맞는 행동,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그 행위는 '부정적 행위'가 된다.(올베우스) 부정적 행위는 위협하거나, 조롱하거나, 들볶거나, 별명을 부르는 것 등 말로 할 수도 있으며 때리거나, 밀치거나, 발로 차거나, 꼬집거나, 불잡는 짓 등 물리적 접촉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인상을 쓰거나, 더러운 몸짓을 하거나, 일부러 그룹에서 따돌리거나, 다른 사람이 바라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 등으로 말이나 물리적 접촉 없이도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부정적 행위를 할 수가 있다.

2) 피해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피해자 : 공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아동 및 청소년
- ② 괴롭힘을 유발하는 피해자 : 고의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공격을 하도록 자극하는 행동을 함으로서 괴롭힘을 당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놀리고 조롱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복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평에 민감하다. 그러한 아동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수동적인 피해자와는 달리 이러한 아동들은 촉매자로 행동하는 가해자가 없더라도 위협에 처할 수 있다.
- ③ 공모적 피해자
- ④ 허위적 피해자

● 피해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징

불안해하고, 불안정적이며, 조심스럽고, 민감하며, 조용하고, 순종적이다.

괴롭힘에 대해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소심하고 무기력하게 성을 내거나, 비효과적으로 보복을 하거나, 감정 폭발 등으로 반응한다.

자기 자신과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실패감, 어리석음, 수치심, 비관적인 신체상, 고립감, 무력감 등을 느낀다. 학교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친한 친구가 거의 없다. 자극적이고 순종적이며, 혼란스럽고 왜 괴롭힘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수용될 수 있는 방법도 찾지 못한다.

의사소통이 서툴고,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2차 신경성 습관, 즉 말더듬기, 손톱 물어뜯기, 손발 혼들기 등이 나타난다.

신체적으로 약하고, 협동을 못하며 괴롭히는 학생보다 나이가 어리고 덩치가 작다.

3) 가해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들은 신체적으로 강하며 다른 집단보다 힘과 자신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가해자들은 그들의 공격이 동료에 의해 목격될 수 있는 상황을 물색하여 갈등과 공격을 가하며 이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겁쟁이 가해자

② 신경증 환자

③ 추종자

가해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공격적이고 충동적이다

남을 괴롭히는 수단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다

죄책감이나 수치심, 그리고 피해 학생에 대한 동정심이 없는 편이다

힘이 세고, 거칠며, 지배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듯 보인다. 또래 아이들은 이를 지도력으로 혼동할 수도 있다.

의사소통을 잘하고, 유머가 있는 편이며, 언어적 반응이 빠른 편이다.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보다 인기가 있는 편이지만 인기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든다.

괴롭힘은 반사회적이고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 방식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괴롭힘을 가하는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반사회적이고 범죄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여학생의 경우, 과장된 자랑, 고함 지르기, 교직원에 대한 무례함, 또래와 교직원에 대한 거만함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4) 괴롭힘의 성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Ronald 는 괴롭히는 여학생의 행동 관찰을 통하여, 자신이 집단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소외시킨다는 것과,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는 더 친밀해지고자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여학생들은 자신이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 피해자를 괴롭히고, 남학생들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괴롭힌다는 주장도 있다(Wachtel,1973).

5) 괴롭힘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괴롭힘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피해 학생 당사자 측면에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과 집단 속에서 다른 집단원들과의 부적절한 사회적 관계 및 부적절한 행동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인기없는 아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고 불안해하며 수다스럽다.

자랑을 많이 하고 잘난 척한다.

사소한 일에서 성질을 부리며 폭발적인 성격을 지녔다.

외모가 단정하지 못하고 유행에 둔감하다.

민감성이 부족하며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한다.

수줍음을 많이 타고 적극성이 떨어진다.

불필요하게 주의를 끌려고 노력한다.

또래들을 욕하고 놀리며 위협함으로서 자신감을 찾으려고 한다.

남의 탓을 많이 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꺼린다.

1) 비디오 시청

① “친구야 함께 놀자” (장애인먼저실천협의회 제작, 2002)

② 추천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③ 추천 - “파리대왕”

2) 토론 : 나라면 어떻게 할까?

① 내가 따돌림을 받는 아이라면 ?

② 우리 반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

③ 집단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를 봤다면 ?

④ 친한 친구가 집단괴롭힘을 당한다면 ?

3. 교육자료

1) 괴롭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단계. 이것이 정말 괴롭힘인가를 분석

2단계. 6하 원칙에 의해 정보 수집

① 집단의 분석 : 개인과 집단과의 관계

② 괴롭힘 집단의 리더 파악하기

③ 사건 경향의 분석

④ 가정과의 접촉

3단계. 세밀하게 관찰 : 교사는 가해 학생의 원인행동보다는 이차적인 결과 행동, 즉 피해 학생의 행동에 대한 처벌만을 가할 수도 있다.

4단계. 괴롭힘의 이유 파악

① 피해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 : 적절하지 않은 시간이나 장소, 괴롭힘을 고의로 유발, 재미를 위해, 공격을 조장, 집단에 수용되기 위한 부적절한 노력, 피해학생의 죄책감,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임

② 가해학생이 괴롭힘을 가하는 이유 : 공격적 행동 양식 고수, 명성을 얻으려는 수단,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 지도력과 지배의 구분 혼돈, 집단에서의 익살이나 재치 혹은 야유로 다른 이를 즐겁게 하는 괴롭힘, 신체적인 기능과 힘의 평가를 통한 경쟁적인 태도, 자신과 유사한 실패를 보이는 사람을 확인하고 목표로 삼음, 사려 깊지 못한 태도 등

Session 2. sheet < 왕따에 대해 알아봅시다 >

1. 왕따의 용어 정의하기 - 내가 생각하는 왕따란 무엇인가요?

2. 왕따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3. 왕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Session 3. 영상교육 - 비디오 시청 및 토론 - “친구야 함께 놀자”

1. 세션 개요 : 세번째 세션에서는 왕따가 발생하는 상황 - 영상을 본 후 왕따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 내용

③ 일단 피해학생으로 지정되면 ↘

5단계. 적절한 지도 및 대응

교사들의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

거칠고 너무 처벌적인 반응은 부정적 결과를 유발

괴롭힘 사건들은 학급이 변해야 나아질 수 있다.

수업 없는 교사-예비사건에 대한 관찰과 분석, 예상되는 상황 도움

괴롭힘은 공개되어야 한다.

교사와 좋은 관계 형성, 토론, 변화 유도

이완기법

부모와 함께 활동

다른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고 상호작용하는 기회 조장

6단계. 괴롭힘 사건의 종결 후 해야 할 일

재발의 위험, 지속적인 지도 → 재발의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 기록, 관찰과 관리 감독, 괴롭힘이 끝났다는 증거 찾기, 장기간에 걸쳐 점검, 다른 아동이 희생

자될 가능성 유의 관찰.

2) 괴롭힘 지도 방안은 무엇인가?

① 괴롭힘 사건의 감지

② 괴롭힘 지도를 위한 활동

피해 학생을 위한 활동

일시적인 방편 :

상급생을 피해 학생의 보호 관찰자로 임명하기

상급생을 피해 학생의 큰형으로 임명하기

피해 학생을 집단 속으로 동화시키기

다양한 흥미 집단을 제공해 주기

부모와 공동으로 활동하게 하기 : 시간, 열의, 금전

활동 프로그램 : 또래 집단, 흥미집단, 성인집단, 정규집단, 대중집단

가해학생을 위한 활동

가해학생은 환경이 바뀌면 그들 자신이 반대로 피해 학생이 되거나 외톨이가 될 수 있다. 괴롭힘

당사자 뿐 아니라, 한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

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이다. 이것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게만 쏠리는 관심의 집중을 분산시키면서, 모든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를 지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을 준다.

이 활동 프로그램은, 두 가지 영역, 즉 관리 감독 및 상벌 규정, 적절한 사회적 행동의 개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ㄱ.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의 태도 변화시키기

ㄷ.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ㄹ. 가해 집단을 위한 활동

Session 3. sheet - “친구야 함께 놀자”

1. 비디오를 보고 난 후 나의 느낌은 ?

2. 토론

1) 내가 따돌림을 받는 아이라면 ?

2) 우리 반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

3) 집단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를 봤다면 ?

4) 친한 친구가 집단괴롭힘을 당한다면 나라면 어떻게 할까?

Session 4. 독서치료 - 이야기 하나 “영대이야기”

1. 세션 개요 : 네번째 세션에서는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 글이라는 매체를 통해 아이들이 왕따와 이와 주변 아이들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이에 대해 토론합니다.

2. 내용 : 이야기 읽고 토론

3. 교육자료

Session 4. sheet “영대이야기” 나누기

1. 이야기를 보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

2. 만약 나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

3. 나의 친구들과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Session 4. 독서치료 - 이야기 둘 “왕따 이야기”

기사검색

- ▷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왕따
- ▷ 외교관으로 근무하는 아버지를 따라 중학교 1학년 때 귀국한 A양이 대표적인 사례.
- ▷ 몸이 아파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급우를 폭행한 사례
- ▷ 장성완군(19), 98년 10월 30일 서울지방법원 재판결과 가해학생 학부모 5 명과 서울시를 상대로 1억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 ▷ 핸드폰을 훔쳤다고 도둑 누명을 쓴 98년 11월 18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의 자살사건.
 - 초등학교 6학년 모양(13)
- ▷ 제주초등학교 H양(12), 농약 먹고 자살. 담임교사 양심가책으로 자살시도.

Session 5. 왕따극복 실제

1. 세션 개요 : 왕따의 유형과 피해자 상황을 이해하고 이들의 자기경험 개방 및 감정적 지지를 도와줍니다.

2. 내용

- 1) 왕따 가해 유형별 상황극(폭력, 괴롭힘, 따돌림)과 대책회의
- 왕따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 입장은 반영하는 상황극 완성, 감정표현 및 기술습득
- 2) 정리 평가

3. 교육 자료

< 유형별 접근 >

Dealing With Non-Provocative Victims 따돌림을 유발하지 않는 피해자

의심이 가는 bully, bullies의 인터뷰 후 즉각적으로 희생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다. 희생자들은 아마도 협조적일 것이다. 왜냐면 bullies들이 교실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처벌 없이 최소한 비언어적으로라도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션동안 개입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지해주는 것이다. 대화의 질문은 opening 질문과 비슷하게 “이런 일들을 너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는 “나는 네가 학대당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들었다.”와 같이 사실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권고한다. 이러한 말들은 더 지시적인 질문을 하는 것보다 관계의 질을 더 좋게 한다고 본다.

#2(see Fig.7.2), adult는 자극하는 요인에 대해 정보를 알린다. 일어나기 쉬운 것,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냄새, 학생들이 변화하기를 희망할지도 모르는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들은 노력하기 위해서 격려되어져야 한다.

#4인터뷰에서, 개입자는 피해자의 요구에 대해 반응을 보일 것인지, #5의 인터뷰로 옮겨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된 미팅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결심해야 한다. 가해자 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세션이 이 개입의 최종 목표이다.

Talking with Provocative Victims 따돌림을 유발하는 피해자

괴롭힘을 유발하는 피해자 세션에서 많은 방법들이 가해자와 얘기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것은 치료자와 괴롭힘을 유발하는 피해자가 situation에 대해 공통의 관점에 도달할 때까지 곤란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토론한다. 이 세션 동안 개입자는 음성 톤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하는데 왜냐하면 비언어적으로도 걱정과 관심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Pikas는 상담가가 신속히 사건을 진전시키는 것을 권고한다.

#2에 CCM세션을 맡은 사람은 괴롭힘을 유발하는 학생들이 다른 사람에게 provoking하는 것을 멈추고, bullying이 없어질 수만 있다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한다. 대안적 실천은 충분한 민감성을 가지고 이러한 의견을 전하는 것이다. Dreikurs(1986)는 좋지 못한 행동(misbehavior)에 대하여 학생들이 고려 할 가치가 있는 목적을 제시했다.

1. 적응적이 못한 행동은 불충분함(inadequacy)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일지도 모르며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2. 부적절한(inappropriate) 반응은 초기의 모욕 또는 부당함을 복수하기 위한 노력일지도 모른다.

3. 더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 방법으로써 관심을 갖게 할지도 모른다.
 4.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개인적 힘이 증가할 것이라고 느끼는 방법으로 반응할 것이다.
- 개입자들은 좀더 전설적인 대안책을 연구하고, provocative한 행동에 대해 실행 가능한 목적을 세워야 한다. Floyd(1985)는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에게 weight training을 고용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3에서 개입자는 provocative한 피해자가 인기를 위해서 대안적인 route 토론에 기꺼이 참여한다는 것을 알게된다. 이 시점에서 희생자는 성공에 이르기 위한 만족스러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되어져야 한다.

#4에서 개입자는 provocative victim에게 사회적으로 효과 있는 차이를 만들도록 하여 변화하게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한다. 상담가는 provocative victim에게 이전의 bully를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상담가는 다가오는 세션동안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에 관해서 느낄 수 있도록 확신을 줘야 한다.

인지적 방법과 전략

상기 전략들은 상담과 교수 가능성을 후기 중학교와 초기 청소년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관련된다. 조금 더 나이가 있는 학생들은 "thinking-based" 접근을 적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인지적 철학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지훈련에서, 변화는 제 국면의 과정을 통해 증진된다. 자신의 반응에 관심 가지기, 증진된 내적 대화를 초기화하기, 보다 나은 대처 기술 배우기가 포함됨.

예를 들면 자기점검은 앞에 설명된 것처럼, 희생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여 그들의 생각, 느낌, 행동과 신체적 신호 모두에 민감해지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후자는 호흡과 심작박동과 같은 주요 스트레스인지를 포함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사고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도록 격려받는다. Mosak. 1989.

1. 과대 일반화 : 예, 세상은 모두 좋아. 누구나 날 생각해 주지 않아.
2. 실수나 불가능한 목표 : 예, 만약 내가 사랑받거나 관심을 받으려면 나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야 해.
3. 인생에 대한 잘못된 지각과 삶의 욕구 : 어떤 것도 나를 위해 돌아가지 않아.
4. 기본적 가치의 부정 :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괜찮지 않아. 왜 누군가를 돌봐야 하지?
5. 잘못된 가치 : 오직 승리만이 최고야. 그밖의 것은 모두 두 번째야.

상담가는 행동적 '실수'가 실제 '사고'실수가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 두 번째 국면에는 새로운 내적 대화와 혼잣말로 시작하면서 학생이 자기 확신을 가지는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안내되는 것이다.

이 전략의 마지막 단계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대처기술을 교수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런 기술은

역할극에서 명료화되고, 연습되며, 실제 생활에서 극적으로 실천된다.

대처 기술을 교수하기 위한 5 단계

1. 학생은 역할극과 연상하기 연습을 통해 불안하고 화나게 되는 상황에 노출된다.
2. 학생에게 어떻게 그들의 불편함과 불안을 스케일 1부터 10까지의 단계로 나타내는지 가르친다.
3.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들의 경험한 사고와 신념에 대한 인지가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가르친다.
4. 학생이 자신의 혼잣말을 재평가, 교정하도록 격려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기술을 가르친다.
5. 학생이 이 재평가에 따르는 불편함(불안) 정도를 기록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대처기술훈련과 스트레스 감화 훈련은 speech 불안, 사회적 위축, 사회적 무능력과 관련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희생 아동과 청소년을 다루는데 매우 유용함이 밝혀졌다.

Session 6. 자기주장훈련 - 공격적, 수동적, 주장적 반응의 이해

1. 목표 :

왕따를 예방하거나 왕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자기주장훈련을 합니다. 주장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부정적 감정(노여움, 분노)과 긍정적 감정(기쁨, 사랑, 칭찬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자신에게 불편, 불쾌, 혹은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데 중점을 둡니다.

2. 내용 :

- 1) 왕따 예방을 위한 주장훈련
- 2) 주장훈련의 지행적 처치

3. 교육자료

3-1. 왕따 예방을 위한 주장훈련

자기주장훈련

주장훈련은 다른 이의 권리를 짓밟지 않고 다른 이의 권리를 위해 지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자신의 권리에 대한 명료화, 분류, 확인 등은 효과적인 개입의 중심이 된다. 희생양은 반복적으로 그들이 학대로 인해 고통받지 않으면서도 bullying에 대해 No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상기되어야 한다.

희생이 되는 학생들에게 굴욕감을 주는 상황을 예견하고 그 상황을 피하는 것 또한 정당한 대처방법과 전략임을 인식토록 해야 한다. 죄의식과 당혹감은 이슈로 자주 일어나며 도와주는 성인에 의해 민

감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핵심요소와 연합된 단정적 행동들은 45분 세션 이상 모델링을 통해 주로 배운다. 성공적 bullying을 예방하고 제한하는 프로그램은 공격적 행동을 피하는 동안 성인모델 주장행동을 돋는 것이다.

주장훈련의 효과성은 또한 영상 기술 사용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 그 과정을 통한 영상을 재결합하는 창조적인 많은 방법이 있다. 예로 실천가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일지, bully가 그들을 건드리는 행동을 멈추도록 단호하게 요청할 것 등을 상상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Five Key steps

1. 문제상황 명확히 하기
2. 필요한 변화와 새로운 행동 명료화
3. 새로운 행동 실천과 정의
4. 새로운 행동 계획과 적용
5. 필요한 만큼의 변화 평가, 수립

step 1. 학생과 실천가는 관련된 사람과 문제상황, 괴롭힘이 발생한 환경을 명확히 한다. 학생들이 최소한 강요되는 상황에서 다루기 어려운 것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는다.

step 2. 학대상황에서 학생이 보여주는 언행이 논의되고 필요한 변화가 고려된다. 학생나이를 고려하여 질문-그때 당시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네가 문제를 다루는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대안을 평가 후 학생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체계적으로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면서 실천한다. 개별 작업에서, 상담가는 먼저 행동을 만들어 보여준다; 희생학생의 역할, 효과적 모델링과정

1.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언어적 반응 모델
2. 학습자에게 어려운 행동의 절차 설명
3. 모델링은 학습을 통해 촉진될 정도로 충분히 반복되어야 한다.
4. 부적절한 표현 피하기
5. 모델행동을 위해 몇몇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특히 학습자와 맞는 성격의 사람들이 도움.

새로운 행동 모델링을 따르면서 학생이 새로 배운 적응적 반응을 실천함에 따라 원조 전문가는 괴롭힘 행동을 가정한다. 주장성 훈련이 집단에 주어진 경우, 다른 집단 성원들은 실연에 참가한다. 촉진자는 가능한 한 현실적으로 반응이 연기되도록 해야한다. 표정, 목소리,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메시지가 대부분을 수행한다. 이를 구성요소는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한다.

주장훈련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 간 일치가 요구된다.

주장훈련은 현실에서의 새로운 행동계획과 적용 모두를 요구한다. 계획은 주장적 반응의 수행을 교정

하는 보상을 포함해야 한다.

주장훈련 촉진자는 학습자가 일지를 쓰도록 격려하고 필요한 교육, 지식을 제공토록 격려해야 한다. 주장적 반응이 적용될 시간과 장소, 사람의 권리를 지지하는 결과는 주의깊게 기록된다. 학습자는 즉각적 성공이 기대되지 않음을 상기해야 한다. 아동환경 안의 성인들은 이런 취약한 환경 안에서 필요한 만큼의 지시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는 학생들과 주장성훈련의 결과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다.

어려운 행동이 성공적으로 사용될 때, 훈련자는 학생이 다음 반응에 참여, 실천도록 해야 하며 더 어려운 상황에 반응토록 해야 한다. 주장적 반응이 모든 문제 상황을 위해 만들어질 때 까지 이런 절차를 지속해야 한다.

사회적 이해가 좋더라도 학교의 생활 중에서 환경이(아동이 아니라) 좋지 않아서(sick)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주장성, 소극적, 공격적 행동의 구별 >

	소극성	주장성	공격성
행동의 특징들	자신의 요구, 권리를 표현하지 못함	자신의 욕구, 권리를 표현	타인을 회생하여 권리를 표현
	정서적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표현	정서적으로 정직하고 직접적으로 표현	정서적으로 정직하나 누군가를 회생하도록 표현
	자기 부정적	자기 향상성	자기 중심적
	타인에게 인간적 권리를 침해하도록 허용	인간적 권리를 유지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부적절한 적의의 과잉반응 및 타인을 멸시하거나 창피를 줌
행동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	불안, 자기에 대한 실망과 뒤늦게 분노	좋은 감정, 확신감	당당한 우월감, 분노, 나중에 죄의식
타인이 느끼는 감정	동정, 연민, 낸더리, 초조	존경	분노, 원한, 복수심
결과	바라는 목표 불성취	목표성취	타인을 회생하여 목표 성취

1. 수동적, 공격적, 수동-공격적, 주장적인 사람 중 여러분은 자신은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2. 주장을 해야 할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한 경우를 적어보세요.(3가지 이상)
3. 한달 전에 빌려간 돈을 갚지도 않고 다시 돈을 빌려 달라는 친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Session 7. 의사소통기술 - Communication skill

1. 목표 : 왕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내용

- 1)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
- 2) 잘 말하기, 잘 듣기, 잘 대화하기
- 3) 칠흙으로 대화하기
- 4) 몸짓으로 의미전달하기

3. 교육자료 : 의사소통기술훈련 - Communication skill

3-1. 칠흙 대화

두명이 한 팀이 되어 칠흙으로 제한된 시간(대개 1분 간격) 대화하기를 합니다

평소 자신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패턴을 알아보기 위한 작업으로

- ① 우선 두 명이 한 팀이 되어 서로 등을 댄채 말하지 않고 칠흙으로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 ② 1분이 지나면 상대에게 말없이 만든 것을 건네 주고, 받은 사람은 어떠한 제한이나 설명 없이 하 고 싶은 대로 칠흙을 만들수 있습니다.
- ③ 이렇게 10회 정도를 반복하고 나서 결과를 서로 보여줍니다.
- ④ 각 팀이 만든 작품에 대해 제목을 만들어 줍니다.
- ⑤ 이 과정에서 느낀 점을 나눕니다. 자신이 만든 모양이 다음 번에 돌아왔을 때 어떤 모양이었는지, 이때 기분은 어땠는지, 그 다음 자신은 어떤 모양으로 되돌려 주었는지의 과정 탐색을 통해 평소 자신의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3-2. 의사소통

- 공손한 단어, 목소리, 신체언어(눈 맞추기, 얼굴표정, 자세, 몸짓) 각자가 자신이 가장 잘 안 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들을 얘기하며 의사소통에서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모두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1) 의사소통 훈련 : 적극적 경청

- ① 시선접촉
- ② 고개짓
- ③ 아, 그렇구나, 맞아 맞아
- ④ 손뼉이나 적절한 제스チャー
- ⑤ 상대에게 질문, 얘기 확인하기

2) 의사 소통이 중요한 이유 : 의사소통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다 잘 이해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도록 돋는 것이다.

3) 무례한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결림돌)

- ① 꼬리표 달기 : 넌 재수 없어, 넌 이기적이야 ② 명령 : 닥쳐, 꺼져
 - ③ 부정적 질문 : 넌 항상 이 모양이냐? / 넌 맨날 이런 식이냐?
 - ④ 트집 : 이게 뭐야?/넌 나한테 관심도 없냐? ⑤ 빙정거림 : 그래, 잘 났다./그래, 고맙다.
 - ⑥ 욕하기 : xxx야,
 - ⑦ 경고, 위협 : 너 자꾸 그러면 죽여버린다.
- (기타 : 투덜대기, 불평하기, 비판하기, 조롱하기, 저주하기, 협박하기, 수근거리기, 잔소리하기, 칭얼대기, 빼죽거리기, 논쟁하기, 울컥 화내기)

4) 공손한 의사소통 : 고백, 감사, 고마움 표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바램, 요구, 나 전달법

- 의사소통이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 : 언어적 방법, 비언어적 방법, 공손한 방법, 무례한 방법
-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차이는?
 - : 언어적 의사소통 - 말로 전달하는 것(단어, 목소리, 어조를 이용)
 - : 비언어적 의사소통 - 행동, 몸짓, 얼굴표정으로 전달하는 것 (신체적 의사소통)

5. 의사소통 파이 (공손한 단어, 목소리-언어적/공손한 신체언어, 듣기-비언어적)

- 1) 공손한 단어(말)
- 2) 공손한 목소리(어조)
- 3) 공손한 신체 언어
- 4) 공손한 듣기 기술

Session 7. sheet 1 - Communication skill

- 1. 의사소통이란 무엇인가요 ?
- 2. 의사소통하는 방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3. 자신의 의사소통 양식을 알아봅시다.
- 4. 의사소통훈련을 통해 자신의 의사소통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

Session 8. 분노조절 - Anger Control

1. 세션 개요 :

2. 내용

- 1) 분노 교육
- 2) 분노에 대한 상황대처
- 3) 분노조절

3. 교육 자료

3-1. 분노 이해

화 이해하기 : 틱낫한의 “화 anger”를 통해 나타난 화 이해하기 - 화란 감자와 같은 것이다. 화는 아기와 같은 것이다. 화는 감자와 같아 막 삶아 먹을 수는 없는 것이다. 화는 뜨거운 감자를 먹을 수 없듯이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화는 아기와 같은 것이다. 아기가 울 때 아기가 왜 우는지 이유에 따라 아기를 돌봐주어야 하는 것처럼 ‘화’를 돌봐주는 것은 중요하다.

분노 스타일의 분류

- 숨기워진 분노 스타일 (Masked Anger Styles) :

Anger avoidance(분노회피형)

Sneaky anger (은폐형-비겁형 분노 혹은 수동공격형 분노)

Paranoid anger (편집형 분노)

- 폭발하는 분노 스타일 (Explosive Anger Styles) :

Sudden anger (돌발형 분노)

Shame-based anger (수치형 분노)

Deliberate anger (의도형 분노)

Addictive anger (중독형 분노)

- 만성적인 분노 스타일 (Chronic Anger Styles) :

Habitual anger (습관형 분노)

Moral anger (도덕형, 대장형 분노)

Hate anger (증오형 분노)

분노의 사전적 정의 : 분노란 어떤 사람(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그 원인을 제거하려는 욕망과 함께 나타나는 불쾌한 감정이다

분노의 기능 : 진화론적으로 보면 분노는 자기보호적 기능을 한다. 관계론적으로 보면 분노는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분노의 반응양식

1. fight (싸움)
2. flight (도주)
3. freeze (얼어붙음)
4. relax (이완)

- 분노를 표현한다라는 말보다는 분노를 터뜨린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억압된 분노와 표출된 분노

표출된 분노 - 소리지르기, 빙정대기, 행동으로 표현하기

억압된 분노 - 꾸물거리기, 냉소주의, 한숨, 상처받을 때 미소짓는다, 짜증, 졸음, 무관심, 많은 정신 신체질환

※ 분노에 관한 교육적 상식

분노란 정상적인 생활의 일부이다.

분노란 한 개인의 생활에서 현실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신호이다.

분노에 의한 행동은 신중히 살펴져야 한다. 그전에 자동적으로 행동을 취해서는 안된다.

분노는 적절히 표현되어져야 하며 통제력을 잃어서는 안된다.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다.

분노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려야 한다.

분노는 가급적 일시적이어야 하며 분노할 일이 제거되면 사라져야 한다.

청소년기 분노의 특징은

- (1) 언어적이기보다는 행동적, 폭발적으로 표출되기 쉬우며
- (2) 분노의 대상이 흔히 전치가 쉽게 되어 무작위적인 대상이 되기 쉽고
- (3) 인지적으로 보다 성숙한 단계로의 진입이 어렵지만
- (4) 다른 강화적 요소로 분노를 가라앉히기 쉬운 면도 있습니다.

3-2. 분노조절 기법

1. 생리·신체적인 분노조절 기법

2. 인지적 분노조절 기법 : 분노상황에서의 분노 인지, 문제해결적 대안 탐색과 평가

3. 행동수정 분노조절 기법

4. 분노조절의 실제 : 뜨거운 자리경험을 통해 실제 분노상황연습, 분노반응, 대처능력 증진

Session 9. 도움 요청하기 - Help seeking (갈등해결)

1. 세션 개요 : 왕따, 집단괴롭힘의 상황에서 잘 대처하기 위한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 요청하는 것이다.

2. 내용

- 1) 갈등해결의 방법 : 회피, 화해, 공격 2) 도움요청 배우기 3) 도움요청 실제

3. 교육 자료

- 1) 갈등에 대한 반응

위험 ← → 위험

갈등에 대한 반응으로는 회피, 화해, 공격 이 있다.

2) 도움요청하기에 대한 교육

- 무슨 말을 해야 좋을 지 도움을 얻어라/ 함께 대화하여 도움을 얻어라/ 도움을 얻어 결정하라

3) 도움 요청하기 실제연습

(1) 과제 소개 및 도움 요청의 방법에 대해 나누기

- 도움이 필요해 도와달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것이 두려운 경험이 있나요?
- 만약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2) 과제소개

- ① 필요한 도움이 어떤 것인지 결정한다. ② 어른들에게 가까이 가서 눈을 마주본다.
③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지요?'하고 물어본다.
④ 대답을 기다린다. : 만약 "그래" 라고 대답하면 말을 계속하고 "아니, 곤란해"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⑤ 도와준 어른에게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인사를 한다.

(3) 시연

- ① 백화점 안에서 화장실을 찾고 있는데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② 어머니께서는 친구의 집에서 전화를 하라고 하셨는데 친구의 집에는 전화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4) 점검

- ① 자기 점검을 격려한다. ② 당황스러웠던 경험에 대해 나눈다 ③ 상황들을 목록화하게 한다.

Session 10. 왕따 없는 학교가 되려면.. / 평가 및 정리

1. 세션 개요 : 그 동안의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복습한 이후 평가 정리함으로서 프로그램을 종결한다. 프로그램 이후 사후모임이나 상담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공지한다.

2. 내용 :

- 1) 프로그램 평가

2) 폴라주 : 왕따없는 학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토론을 하며 폴리주 작업을 한다.

- 3) 평가서 작성

3. 토론 자료

- 1)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

- 2) 내가 좋아하는 학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 3) 왕따없는 학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폴리주 작업하기

- 4)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은 ?

< 참고자료 >

1. 단 올베우스 지음, 이동진 옮김 <바로 보는 왕따 대안은 있다> 삼신각. 1999.
2. 강진령, 유형근. <집단괴롭힘>. 학지사. 2000.
3. Strategies to help solve our school dropout problem. Franklin P. Schargel. Jay Smink. eye on education. 2001.
4. 데이비드 존슨, 로저 존슨 지음. 추병완김영은 옮김. <갈등해결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백의교육총서. 2000.
5. 상담센터 빵과영혼, <용서Ⅱ-'분노' 워크샵 자료집>. 2002.
6. John E. Lochman, Janet M. Whidby and David P. FitzGerald Philip C. Kendall. <Child and Adolescent Therapy Cognitive-Behavioral Procedures. second edition> The Guild Press. New York. London. 2000
7. 콜렛산데 지음. 최재훈 옮김. 영피스메이커3 학생용. <화해를 통한 리더쉽> IDI. 2000
8. 콜렛산데 지음. 최재훈 옮김. <영피스메이커 교사용> IDI. 2000
9. 한국행동요법학회. <행동요법>. 양서원. 2001.
10.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연구지원팀, 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Praxis, <사회복지 척도집>. 나눔의집 출판사. 2002
11. 변귀연, 집단괴롭힘 피해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2002. 서울대 박사논문

Session 4. 독서치료 첨부자료

< 내짝꿍 최영대 >

4월 어느 날 아침, 더벅머리를 한 남자아이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헐렁한 옷에 다 헤어진 운동화를 신은 꾀죄죄한 아이였어요. 아이들은 그 애의 모습이 신기한 듯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 애를 소개했어요. 이름은 최영대, 여기서 멀리 떨어진 어느 시골 학교에서 전학온 거래요.

영대는 아주 조용했어요. 공부를 할 때도 쉬는 시간에도 조용했어요. 그 애는 행동도 조용조용했어요. 천천히 소리 안나게 일어나서는 소리 안 나게 걸어다녔어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느렸어요. 글씨 쓰는 것도 느리고 밥 먹는 것도 느렸어요. 누가 자기 흉을 보아도 잠자코 있었어요. 아이들은 영대를 놀렸어요.

“굼벵이 바보! 재는 말도 잘 못한대. 아마 듣지도 못할 거야.”

영대는 언제나 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몸도 잘 씻지 않는지 영대가 지나갈 때면 지독한 냄새가 났어요. 실내화도 없이, 가방은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고 준비물은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여자아이들은 영대와 같이 앓기 싫다며 선생님을 졸랐어요. 그래서 여름 방학이 다 되도록 영대는 맨 뒤에 혼자 앓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러는데 영대는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거의 말을 안 하고 지냈대요.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있는 말이 몇 안된대요. 그리고 웃차림도 지져분했어요. 다른 식구도 없이 아버지와 단둘이 산다는데, 생각해 보면 불쌍한 아이였지만 우리는 모두 영대를 따돌렸어요.

그래도 영대는 울지 않았어요. 몇 번 노려보긴 했지만 그것으로 다예요. 그래서 더 바보소리를 들었어요. 남자아이들은 걸핏하면 영대 가방을 빼앗아 교실 밖으로 던져 버렸어요. 또 어느 때는 우유를 먹는 시간이었는데 일부러 그 애 팔을 흔들어 우유를 다 쏟게 한 일도 있었어요. 그러고는 선생님께 이르는 거예요.

“선생님, 영대가 우유를 엎질러 제 책상이 다 젖었어요. 혼내 주세요.”

“선생님, 영대를 복도로 쳐아내요. 냄새가 나요.”

하지만 영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더 바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이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영대를 괴롭혔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별주면 아이들도 영대를 벌주었어요. 누가 물건을 잃어버리면 분명히 영대가 가져갔을 거라며 영대 가방을 교실 바닥에 쏟아 놓고 살같이 뒤졌어요. 우리반 화장실이 더러운 게 바로 영대 때문이라고 날마다 화장실 청소도 시켰어요. 선생님이 몇 번 야단을 쳤지만 나중에는 선생님도 그냥 내버려두었어요.

한번은 아주 큰 일도 있었어요. 영대를 벽에다 세워놓고 남자아이들이 모두 한 대씩 때린 일이에요. 물론 선생님이 안 계실 때에요.

왜 애를 때리냐고 나랑 여자아이들이 말렸지만 남자아이들은 눈을 흘기며 우리한테도 으르렁거렸어요. 영대는 코피가 터졌어요. 눈 주위에 시퍼런 멍도 들었어요. 그래도 울지 않았어요. 노려보기만 했어요. 나는 무서웠어요. 남자아이들도 무서웠고 영대도 무서웠어요. 나처럼 영대를 불쌍하게 여기는 아이들도 몇 명 있었어요. 영대를 때리고 굴려 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남자아이들이 하도 사납게 굴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느 날 청소 당번이어서 다른 때보다는 좀 늦게 교실에서 나오는데 영대가 학교 운동장 응달진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말을 걸어 볼까? 했지만 그만 두었어요. 영대 표정이 슬퍼 보였기 때문이에요. 물끄러미 아이들 노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대는 한번도 그렇게 운동장에서 놀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도 영대를 놀이에 끌어주지 않았거든요. 영대가 다가오면 돌을 주워 쫓기도 했어요.

하긴 처음에는 영대가 바보인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다 “굼벵이 바보”라고 놀렸거든요. 우리 엄마는 영대 얘기를 들으시곤 가슴 아파했어요. 영대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슬퍼하고 계시겠느냐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나는 생각했어요. 만약에 우리 엄마도 영대어머니처럼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영대처럼 되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엄마를 따라 죽어 버렸을 거예요.

나는 영대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나도 한번 “굼벵아, 저리가!”하고 소리질렀는데 그걸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탕도 가져가고 점심시간에 도시락 반찬을 건네 주어도 영대는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여름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되었어요. 10월 어느 날 우리 3학년 학생들은 경주로 단체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며칠 전부터 아이들은 기분이 들떠 있었어요. 서로 준비할 것을 의논하고 밤에 모두 둘러앉아 놀 궁리도 했어요. 나도 즐거웠어요. 이 때만큼은 아이들은 영대를 골탕 먹이지 않았어요. 전혀 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대도 가끔 미소를 띠었어요. 선생님이 여행 얘기를 하실 때와 아이들끼리 준비물 회의를 할 때 말이죠.

아이들은 영대도 같이 간다는 걸 알고 몹시 기분 나빠했어요. 바보가 따라가니 창피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꾸중을 듣고서야 겨우 아이들은 잠잠해 졌지만 선생님이 안 보실 때면 “너, 우리 따라가면 가만 안 둘 거야!”하며 영대를 협박했어요. 영대는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드디어 여행 날이 되었어요. 구름 한점 없는 아주 맑은 가을날이었어요. 엄마의 배웅을 받으며 우리는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달리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노래를 죄다 불렀어요. 손뼉을 치고 발을 굴렸어요.

그 다음에는 도시락을 먹고 낮잠도 실컷 잤어요. 맨 앞에 혼자 앉은 영대는 아이들이 다 잠든 다음에도 한참 동안 창 밖을 내다보았어요. 영대의 얼굴을 햇빛을 받아 환히 빛나고 있었어요. 나도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오후에 경주에 내려 우리는 국립 경주박물관과 첨성대, 포석정을 구경했어요. 아이들은 가는 곳마다 “와!”하며 탄성을 질렀어요.

저녁이 되니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을 쳤어요. 방에 짐을 풀자 마자 우리는 식당에 내려가 저녁을 먹었어요. 밥도 맛있고 반찬도 맛있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밥을 다 먹었어요. 영대도 더 먹었어요. 밥풀도 안 흘리고 물도 안 흘렸어요. 그런 다음, 마당에 모닥불을 피워 놓고 서로 웃고 떠들고 놀았어요.

방에 들어와 베개를 베고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질 않았어요. 선생님은 불을 끄고 창가에 서 계셨어요. 방은 깜깜했지만 유리창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와 그리 어둡진 않았어요. 아이들이 모두 잠들 때까지 선생님은 창가에 서 계실 작정이셨나 봐요. 하지만 잠자리가 낯설어서 방을 나가시기를 기다리며 잠을 쫓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나가시면 저희들끼리 재미나게 놀 생각을 하면서요. 선생님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조용했어요. 아주 조용했어요.

그때 방귀 소리가 뿡 하고 났어요. 아이들은 모두 그 소리를 듣고 말았어요. 선생님은 “누구야? 누가 잠 안 자고 방귀를 뀌는 거야?”하고 호통을 치셨어요. 어두운 방 여기저기 서 아이들은 킥킥거렸어요. 그런데 누가 “굼벵이 바보가요! 저 바보가요.”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코를 싸매고는 “아휴, 방귀 냄새! 굼벵이 방귀 냄새는 역시 달라.”하고 코맹맹이 소리를 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웃으며 물으셨어요. “누구? 굼벵이?” 그랬더니 정말 굼벵이같은 반장이 영대를 가리키며 “이 애요, 엄마 없는 바보 말이에요.”하고 소리쳤어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으앙!”하고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영대가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아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영대가 울 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영대는 한 번도 운 적이 없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것이어서 더욱 놀랐어요. 울고 있는 영대의 모습이 어두운 방 구석에서 떠올랐어요. 모두들 영대를 볼 수 있었어요. 양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 박고 어깨를 출렁이며 울고 있었어요.

선생님도 당황하셨는지 잠자코 계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잠시 후 나는 영대에게 기어가 “미안해, 그만 울어.”하고 달랬어요. 나도 눈물이 나오려고 해 혼났어요.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다가와서는 미안하다는 말,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말, 다신 안놀리겠다는 말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선생님도 영대를 달랠 수 없었어요. 야단을 칠 수도 없었어요.

선생님은 불을 켰어요. 그러곤 아이들에게 벌컥 소리를 질렀어요.
“모두 일어나!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돼. 내가 그렇게 타일렀는데도 한 반 친구를 괴롭히다니, 나쁜 녀석들!”

이렇게 선생님이 화를 내시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앉아!”
끝도 없이 선생님이 외치셨어요. 그 구령에 따라 우리도 끝도 없이 일어났다 앉았다 했어요. 모두 울상이 되었어요.

영대는 계속 울었어요. 아무 것도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가끔 돌아가신 엄마를 부르는 듯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 동안 받은 설움을 모두 울음으로 토해 내려는 것 같았어요. 영대를 따라 아이들 사이에서도 울음이 조금씩 새어 나왔어요. 아이들은 울면서 “미안해, 미안해, 다신 안그럴께.”하며 사

정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영대는 계속 울었어요. 울음소리를 듣고 다른 방에서 아이들이란 선생님들이 쫓아왔어요. 문을 열어보고는 모두들 놀라 할 말을 잃은 모양이에요. 주임 선생님도 오시고 교감 선생님도 곧 달려오셨어요. 그러고는 잠자코 서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계속 손을 머리 위에 포개고는 일어섰다 앉았다를 했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결국 모두 다 주저앉아 울어 벼렸어요. 선생님도 울어 벼렸어요.

구경 온 다른 반 아이들도 울먹울먹하다가 선생님들께 불들려 가 버리고 우리는 울음바다가 되어 베린 방에서 마음껏 울었어요. 모두 영대한테 정말 미안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처럼 사과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저 울기만 했어요. 모두 영대 마음이 되어 영대처럼 울기만 했어요. 동이 틀 때까지 그러고만 있었어요.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 보니 다른 반은 전부 떠나 버리고 여관에는 우리 반만 남아있었어요. 포항제철을 견학할 예정이었거든요. 우리들은 통통 부은 눈을 비비며 아침을 먹는 등 마는 등 하고는 버스에 올랐어요. 간밤에 일어난 일로 아이들은 이상한 만큼 점잖아졌어요. 영대도 점잖아졌어요.

영대는 전날처럼 버스 맨 앞에 앉았어요. 그런데 반장이, 영대에게 엄마도 없는 바보라고 놀렸던 반장이, 슬그머니 앞으로 나와 영대 옆에 앉는 거예요. 그러고는 영대 손에 무언가를 건네주려고 했어요. 영대가 안 받으려고 하자 반장을 견연쩍게 웃으며 영대 가슴에 무언가를 꽂아주는 거예요. 전날 국립 경주박물관에서 산 기념 배지였어요.

아이들이 다들 보고 있었어요. 버스 운전사 아저씨가 앉으라고 소리쳤지만 우리 모두 앞으로 몰려와 보고 있었어요. 내가 얼른 가서 영대 다른 쪽 옷에 내가 산 기념 배지를 꽂아 주었어요. 내 것이 더 예뻤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애들도 제각각 자기 것을 가져왔어요. 그러고는 한 명씩 그 애에게 기념 배지를 꽂아 주는 거예요. 배지를 사지 않은 아이는 호주머니에 사탕을 넣어 주기도 했고, 그저 악수를 청하고는 돌아서는 아이도 있었어요.

영대는 어리둥절했지만 아이들 하는 대로 가만 두었어요. 운전사 아저씨는 소동이 멎을 때까지 길 한쪽에 버스를 세워 두셨어요.

아이들이 다 물려간 다음 영대 옷을 보니 옷이 온통 배지로 가득했어요. 굉장히 멋진 옷이 되었어요. ‘축 국립 경주박물관 관람기념’이란 금박 글자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옷 전체가 환해졌어요. 운전사 아저씨는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그 애에게 씩워주며 “생일인가 보구나? 생일 축하 한다”고 말씀하셔서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버스는 다시 신나게 달렸어요. 달리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노래를 죄다 불렀어요. 손뼉을 치고 발을 굴렸어요. 영대도 같이 불렀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요.

잊을 수 없는 ‘축 국립 경주박물관 관람기념’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영대는 좀 달라졌어요. 옷차림도 깨끗해지고 꾀죄죄한 얼굴도 조금씩 하얘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대가 지금 말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반 아이들이 영대를 불잡고 말하는 연습을 시키거든요. 영대가 잘 안된다고 울상을 지으면 아이들은 엄마처럼 다래주어요. 또 울음이 시작될까봐 겁이 나는가 봐요. 이제 영대를 괴롭힌다는 생각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영대는 우리 반에서 제일 소중한 아이가 되었어요. 나에게도 그래요. 영대는 지금 내 짹궁이에요.

기사검색

사례 ▷ 서울 ○○중학교 H양

H양은 학교에 도시락을 안 가지고 다닌 지가 두 달째(98년 11월 8일 이전 현재)가 되었다. 아무도 같이 먹어주는 친구도 없고, 혼자 먹기 싫어서가 그 이유이다. 가방은 늘 한쪽 어딘가가 떨어져 있고, 발로 밟고,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 점심때면 혼자서 운동장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일이다. 도시락을 싸줘도 가져갈 수 없는 딸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아프기 한이 없을 지경이다. 그래서 아침은 꼭 먹이고, 학교가 끝난 방과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점심을 챙겨주려 오신다고 한다(4시). 가끔씩은 책도 찢기고 공책도 없어지며 쓰레기통에 있기도 한다. H양은 학교에서의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하루이며 학교 복도를 걷기 깜깜하다고 한다. 더욱 H양을 힘들게 하는 것은 왜 자신이 따돌림을 받아야

하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기에 더욱 괴롭다고 한다. 단지, 다른 지역에서 전학온 것이 이유인지 모르겠다는 추측만 할 뿐이다.

H양의 하루는 반 전체와의 싸움이라고 고백한다. 때로는 화장실을 같이 안 간다고 싸우고, 늘 시작은 단순한 일들로 인해서 벌어진다. 말다툼한 친구가 왕따시키고, 그리고 전파가 된다. 치마를 안 훔쳤는데 훔쳤다고 가방을 뒤지고, H양에게 더욱 커다랗게 상처와 충격을 준 일은 가정시간에 조별모임을 자유스럽게 갖게 될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 조에서도 자신을 끌어주지 않았는데 H양을 끌어준다는 조가 있었다. 그리고는 더욱 노골적으로 따돌리고 더욱 심해진 일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로는 눈물도 안나온다고 한다.

그 이후 어머니에게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이의 소극적인 성격 때문이려니 하고 가볍게 넘어 가게 되었으나 오늘, 내일, 그리고 계속되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친구들을 어떻게 해 버리려고 작정하였고 폭행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한다. 딸의 고통을 그렇게라도 끝내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고 한다. H양은 차라리 맞고서 끝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하소연만 하게 되었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으나 H양에게 더 피해 갈까 염려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어머니의 애타는 심정이었다.

딸의 처지를 알고도 학교를 못 찾아갔고, 고자질하지 말라는 친구들의 협박과 우리 사이의 일은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불문율은 더욱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고, 조심스럽게 담임선생님과 전화를 통해서만 상의하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참다못한 H양의 어머니는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한 결과 친구들로부터 다른 곳에서 전학 와서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 이유임을 알게 되었다.

H양의 어머니는 혹시나 해서 정신과 치료를 한 결과 H양은 애정결핍이 문제가 되어 '정서불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우울증적 증세가 심각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 스스로가 원인을 가해자에게서만 보지 않고 자녀의 성격이나 환경 속에서 파악하고자 노력한 결과 그 달 말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게 되었다. 친구들은 왜 보온 도시락이 아닌 일반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느냐며, 김치는 싸오지 말라고 했다는 딸 아이의 말을 듣고,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에서 따돌림의 상황이 한 개인의 문제차원을 넘어서 한 가족의 위기로까지 몰고 갈 수 있음을 느끼게 해 주는 사례이었다.

비록 H양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게 되었고, 친구들과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지라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능성 있다면 면에서 H양은 희망이 있는 사례가 되고 있다(SBS, 그것이 알고싶다 -"소리없는 폭력" : 왕따, 98/11/8).

참여와 자치로 풀어가야 할 '왕따'(wang-ta)문제



김대유 서문여중 교사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정책위원
-청소년단체협의회 정책연구위원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

1. 학교는 왕따(wang-ta)의 못자리

① 문제인가 문화인가

학교 폭력은 학교 밖에서 임태되어 학교 안에서 배양되고 다시 학교 밖으로 돌아가는 사회적 회귀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학교 폭력 형태는 인종, 마약 총기가 매개가 되어 인명을 살상하는 미국 등의 학교폭력에 비하면 경증형에 해당되지만, '폭력 서클'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점점으로 다수의 불특정 학생이 동시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가능성을 갖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른 바 '왕따'가 문화 현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¹⁾ 집단을 형성하는 방법도 '종적 연결'에서 '횡적 연결'로 변화되고 있다. 문제의 근절도 쉽지 않고, 당국의 노력 또한 변변치 않았다. 학교는 이 사회 회망을 낳는 산실이며 못자리이고 모델이다. 그런 면에서 학교 폭력은 총체적인 면에서 사회학적인 접근과 교육적인 매듭을 우선 풀어 나가야 할 성격이다.

학교폭력이 소수의 서클에 의해 소수의 학생이 피해를 보는 '문제 현상'에서 다수의 학생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등장하는 '문화현상'이 된 배경에는 그릇된 교육적 토양이 작용한다. 관행화된 교사들의 학생 체벌, 학생간의 폭력, 학교 생활의 부적응은 입시의 용도로만 치부되는 불필요한 영·수·국 위주의 학교 교육과정과 관료행정주의에 억압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소모적인 생활주기(life cycle)가 배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 폭력 캠페인 참석하기, 방과후 교외 순찰하기, 봉사 활동 계획서 짜고 확인서 작성하기, 컴퓨터 교육받기, 성교육하기 등 끝이 없는 보고용 시책성 잡무 속에 파묻힌 교사들은 정작 아이들을 만나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시간이 없다. 뛰는 아이에 걷는 교사, 어른들이 의식의 제자리 뛰기를 반복하는 동안 학교폭력은 왕따 문화로 확대된 것이다. 학교 폭력이라는 용어가 일선의 학교장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청소년 폭력이라고 불리기를 주문하고 있지만, 사실 학교 폭력은 국제적인 학술·사회적 용어로 널리 쓰여왔고, 이제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²⁾ 제도적 대책의 원년이 시작된 셈이다.

② 안전(safety)인가, 예방(prevention)인가

보통 학교폭력을 진단할 때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 중증(重症)형: 對교사폭력 + 對기물파괴폭력 + 對학생간 폭력

▶ 중증(中症)형: 對교사폭력 + 對학생간 폭력

▶ 경증(輕症)형: 對학생간 폭력

독일, 미국, 영국과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국면하고 있는 것은 중증(重症)형 학교폭력이고, 일본과 스칸디나비아 3국, 동유럽 등은 중증(中症)형에 해당하며, 중국과 헝가리, 한국 등은 경증(輕症)형 국가(대부분 공산국가였던 나라들)에 속한다. 그러나 최근 개방의 불을 탄 중국과 동유럽 국가 역시 학교폭력이 점점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분류상 경증형이지만 거의 모든 학교에 일진이라 불리는 학교폭력 그룹이 광범위하게 실존하고 있고, 피해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적으로 희귀한 사례에 듣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코 사태가 생각보다 가볍지 않

1) 한국에서 번지는 왕따(wang-ta)는 국제 학계에 이지메(집단 따돌림)와는 구분되는 독특한 유형으로 보고되고 있다.

2) 2003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04년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동법률은 2004년 7월까지 시행령을 완성하면 2004년 8월부터 단위학교에 적용된다. 이는 대한민국 교육부와 교장들이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공식으로 인정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는 분기점을 이루고 있다.

다는 뜻이다.³⁾ 일례로 최근에 경기도 부천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에서 학원폭력과 집단적인 괴롭힘을 나누어서 조사를 하였는데⁴⁾, 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49.8%로 전체의 약 절반 가량이 지난 일년간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하였으며, 폭력의 피해로 가장 심한 것은 절도로서 35.7%가 절도피해의 경험을 갖고 있고, 그 다음으로 강탈(13.4%), 협박(10.2%), 성폭행의 경우는 8.7%였다.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실시한 학교 폭력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절반정도가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 생활에서 학교폭력의 한 형태로 우리의 관심을 모아온 것은 집단 따돌림이다.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피해 사례는 각종 통계가 증명하고 있고, 해가 갈수록 사태가 나아지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없으며,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 피해는 커지고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다음 몇 가지 실증 사례를 살펴보자

2. 왕따와 학교폭력의 실증적 사례

사례① 시스템적 처방이 필요하다

지난 1월 서울대 의대 조수철(정신과) 교수팀이 서울시내 16개 중학교 학생 2,2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 내 집단 따돌림 피해자의 약 30%가 정신질환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학생들이 보인 정신질환 징후(2%)보다 무려 15배나 높다. 극단적인 교내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정신질환에 빠질 가능성은 집단 따돌림 피해자의 정신질환 징후(30%)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⁵⁾

사례② 사이버 왕따 사례⁶⁾

아이들은 번개통신이라고 불리는 버디버디를 통하여 24시간 협박하고 불러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패거리로 급우의 이메일을 육설로 마비시키는 일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어떤 때는 학교마다 등록된 홈페이지를 통해 선생님을 집단으로 욕하고 왕따시키는 일도 있다. 그 때문에 사표를 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여선생님을 상담한 적도 있다. 승연이가 당한 사이버 폭력 사례는 평균치에 불과했지만 위험한 사건이었다. 중학교 1학년 승연이는 평범하지만 학급에서 꽤 인기가 있는 아이다. 성격이 좋고 친구들을 편하게 대해주는 승연이에게 잘 생기고 공부 잘하는 같은 반의 인기있는 남학생 성호가 인터넷 버디버디로 '관심'을 표시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승연이 역시 예의를 차려 '호감'을 나타내는 답신을 보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었다. 평소 성호를 짹사랑하는 학교폭력 일진의 짱인 은예는 그 사실을 알고 치밀한 보복 작전(?)을 펼쳤던 것이다. 은예는 먼저 성호의 단짝인 석웅이를 시켜 역으로 승연이가 성호에게 꼬리를 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는 악소문을 냈다. 그리고 다른 반의 패거리 를 시켜 승연이를 집단적으로 폭행하고 위협을 가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통신으로 끊임없이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오빠들'을 동원하여 짓밟아주겠다는 등의 언어폭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한 술 더 떠 담임선생에게는 승연이가 연애질을 하고는 오히려 그 사실을 지적한 석웅이를 밀치는 폭력을 행사했다고 음해를 하였다. 특히 석웅이를 시켜서 은예 패거리의 육설에 대응한 승연이의 사이버상의 대응 육설만을 달랑 카피하여 담임에게 건네주고는

3) 각급학교 재학생 4명 중 1명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2003년 9월 청소년보호위원회 통계)/ 사이버(10.1%), 금품갈취 피해(21.2%), 괴롭힘(14.7%), 성폭력(6.6%)-2001년 학교폭력 실태 조사 보고서(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1.12)

4) 폭력을 학교 안이나 혹은 학교주변에서 일어나는 강탈, 폭행, 협박, 절도, 성폭행 등을 학원폭력이라 정의하였다

5) 사례① - 한국일보 2001-03-19 05면

6) 사례②-김대유(서문여중 교사)의 지도사례-'가끔 아이들은 억울하다'(김대유.우리교육, 2003)

담임에게 승연이가 이렇게 욕설로 은예를 협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담임은 그런 줄도 모르고 “승연이가 어찌 이런 욕설을 할 수 있나”하고 분노하면서 승연이를 오해하였고, 담임에게까지 배척받은 승연이는 사면초가의 신세로 전락했다. 승연이와 엄마는 가정 통신문까지 보내 아이의 단정하지 못한 학교생활을 질타하는 담임의 강력한 지도에 절망했고, 불면의 밤은 지속되었다. 궁지에 몰린 승연이의 엄마는 시급히 가족회의를 가졌지만 상황이 너무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달리 뾰족한 해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필자에게 상담을 의뢰하기에 이르렀고, 필자는 한두가지 대응방법을 일러주었다. 엄마는 백기를 드는 심정으로 승연이와 함께 긴 호흡의 편지를 써서 담임에게 보냈다. 다행히 자초지종이 담긴 편지를 받아 본 담임선생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했다. 은예의 폐거리를 불러 육하원칙에 따라 사유서와 반성문을 작성하게 했고, 다른 반 담임들과 협력하여 위해를 가한 학생들을 불러 강력히 지도했다. 나아가 연계된 다른 학교 폭력서클 아이들의 담임에게까지 사태를 알려 강력히 지도했다. 불씨가 아주 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고비는 넘긴 셈이다. 그러나 2주 동안 진행된 집단 사이버 왕따와 담임선생님의 오해, 이런저런 상처를 입은 승연이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달랠 길이 없다. 왕따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단순히 친구를 괴롭히는 수준을 넘어 사건을 기획하고 조작하여 교사까지 속아 넘기는 수법이 동원되기 일쑤다.

사례③ 언론의 추적과 학교당국의 은폐

서울 강남의 G고에 재학 중이던 2학년 이아무개양은 ‘웃었다’고 시비를 건 학교폭력 일진 아이들에게 화장실로 끌려가 물고문과 구타를 경험한 후 심각한 피해에 직면했다. 가해자들은 집단으로 대응했고, 문책을 두려워 한 학교장과 담임교사는 은폐를 시도했으며, 감독하고 조사해야 할 교육청은 학교장의 은폐를 방조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언론과 교육부 민원, 시민단체를 전전하며 온통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대전 대덕고(학부보-이동진씨) 학교 폭력 사건 역시 이와 비슷하게 전개되어 재판정에서 학생부장과 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가해자들은 송치 처분을 받는 등 일파만파를 불러일으켰다.⁷⁾

3. 왕따를 발생시키는 학교문화

① 수직적이고 계급적인 학교

아이들은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타임머신을 탄다. 검은색 교복을 입고 19세기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이들을 통제하는 가장 큰 수단은 선도규정이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복장 등을 규정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양말은 흰색 면양말을 착용하되 복숭아 빼 위로 올라오는 것은 금지한다.”

“가방은 적색 등 원색 칼라는 금지한다. 소지한 모든 가방 종류는 B4 용지 이상의 크기여야 한다. 금지한 가방을 소지한 경우 압수한다.”

“두발은 단정해야 하며 귀밑 3센티미터 이상 기르는 것은 금지한다. 일체의 염색과 퍼미도 금지한다.”

“목걸이와 귀걸이 등 장식품은 금지한다.”

“외출은 병원진료의 사유에 해당될 때만 허용한다.”

“학생이 외부단체에 발제, 토론 및 참가할 때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아리 활동의 점수는 학교에서 CA로 개설한 특별활동반에게만 허용한다.”

교사의 역할 역시 한정적이다. 무엇을 새롭게 하자는 ‘덧셈’ 생활지도보다는 하지말자는 ‘뺄셈’ 생활지도에 매몰되어 있다. 두발과 복장을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보자는 생각은 아예

7) 이 두 사건 역시 필자가 자문과 상담을 맡았음

엄두도 못낸다. 자율을 제시하면 의식화시키는 교사로 오인받거나 문제교사로 낙인 찍히기 쉽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교육활동이 자리매김된다. 그것도 법령이나 학교규칙에 근거한 통제가 아니라 상당히 교사 개인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짙다. 이는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관행이 군사정권 시절로 이어지고 그 잔재가 지금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는 식민지 교육의 폐해는 심각하다.

우리는 OECD 국가들처럼 학교자치(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가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⁸⁾, 교육환경은 열악하며,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는 생성된 적이 없다. 교사는 수평적인 시각으로 아이들을 대하기보다는 위만 쳐다보며 훈련소 하사관처럼 아이들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학부모회 역시 학교의 보조기관으로 취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들간에도 계급의 질서는 염연하다. 공부를 잘하거나 부모가 나거나 주먹이 세거나 하는 10% 이내의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약육강식의 대상이 된다. 아이들은 교사를 원망하고 교사는 교장을 탓하고 교장은 교육청과 교육부에 지배 당하는 관료주의 체제에서 학교폭력 문제는 당연히 예방과 적극적인 지도보다는 사후 처리나 ‘우리 학교는 학교 폭력 없다’는 보고로 은폐하고 축소하는 관행이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복종이 강요되는 학교행정, 침묵이 관행화되어 있는 학교문화는 학교폭력이 기생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다. 그 일차적 책임은 그러한 교육정책을 양산한 교육인적자원부에 있다.

② 학교는 인권의 사각지대

현재 우리 나라는 청소년 인권의 후진국이다. 한국이 1991년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 1월에 한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권고문을 냈다. 권고문의 내용은 《학생의 표현·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육부 지침과 학교 교칙을 개정할 것》,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할 것, 교사들에게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할 것》,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협약 29조 1항에 언급된 교육의 목적이 반영되도록 정부의 교육 정책을 재고할 것》 등이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인권이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그 원인 제공의 상당한 부분이 국가, 즉 정부에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무엇보다 스스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스스로의 인권에 대해 자각하지 못한 인간이 성장하였을 때에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학생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은 교육기본법이 교육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⁹⁾ 어릴 때부터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훈련한 사람들은 성장하였을 때에도 훌륭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의 보장은

8) 초중등교육법 제17조, 30조에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이는 학생회를 학생들의 자치기구로 인정하지 않고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구성하여 지원하는 교육적 개념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를 곡해하여 교육부 관료들조차도 우리나라에 ‘학생회’가 법제화되어 자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회는 특별활동의 과정일뿐이지 법적인 학생자치 기구가 아니다.

9) 하승수변호사(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실현연대(교선보연대-<http://educham.org>) 주최 ‘학교자치 법률시안’ 토론회 발제문 2003.8.13). 교선보연대(대표-김대우 서문여중 교사)는 2002년 대선 국면에서 노무현 후보를 초청한 학교자치 개혁 토론회(2002.11.21)를 개최하고, 교장보직제와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의 법제화를 골자로 한 대선공약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반드시 정부의 반성과 학교단위의 학교자치, 학생자치로 풀어가야 할을 시사한다. 학교 구성원 전체의 교육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4. 왕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① 왕따의 특징과 대응

문제의 동기가 상이하듯이 해결의 지향점도 달라야 한다. 영·미의 학교폭력은 그 나라들의 법치체계, 문화에 맞도록 폭력을 행사하는 '개인'에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경찰력과 강력한 법 집행으로 나타나며, 일본은 지방자치 경험에서 우리나라온 탄탄한 사회적 네트워크에 바탕한 '위원회' 형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교장선출보직제나 학교자치를 적용하과 동시에 아무래도 '실천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자치에서 해결점을 찾아야하지 않을까 싶다. 두레 공동체처럼 학급자치를 통해 왕따 현상을 '우리 문제'로 끌어들이고, 학생회의 자치화와 학운위 활동으로 왕따문제를 '공론화'시켜야 한다. 단순히 신고전화나 경찰력만 갖고는 한계가 따른다. 다음은 필자가 자문위원으로 관계하고 있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제작한 자료를 통해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 왕따와 관련된 은어

따: 일반적인 따돌림

따돌이, 따순이: 따돌림을 당하는 남학생과 여학생

은따: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

전따: 전교생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

개따: 개인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

집따: 집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

쌩까: 집단으로 따돌리기 위해 피해학생을 무시하는 행동

- 왕따가 폐해자의 행동 특성

신체외모나 목소리가 특이함/ 지저분하거나 복장이 엉망/ 잘난 척하고 이기적/ 부끄럼을 많이 타거나 과잉반응을 보임/ 교사의 편애/ 교사의 관심과 애정을 지나치게 독점/ 용돈을 낭비하고 소비를 잘 하는 아이/ 폭력에 쉽게 굴종하는 아이

- 자녀를 왕따 폐해자로 만들 수 있는 부모 유형

사랑과 애정 부족/ 일관성 있는 가정교육 결여/ 가정 결손/ 폭력으로 훈계

과잉보호, 왕자병과 공주병 부추김/ 칭찬보다는 잔소리와 비난

단체생활보다는 공부 전념 강조

불의를 보면 잘 참는 법을 일관되게 가르침/ 형제 및 아들 딸 차별

강압적인 일방통행식 대화법

부모의 뜻대로 진로 강요

- 자녀를 왕따 가해자로 만들 수 있는 부모 유형

자녀교육 방치 / 당당하지 못한 태도 아이에게 무조건 지는 부모

이기적이고 이해심 부족한 아이로 키우는 것 / 폭력성 넘치는 가정교육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 다른 집 자녀와 비교

타인 앞에서 자녀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기

왕따 피해를 당했을 때 "너도 그렇게 해라"

- 부모가 알 수 있는 자녀의 왕따 피해 현상

전학, 자퇴, 검정고시 타령/ 말수가 적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 증가/ 지각 자주함

학용품 및 소지품이 자주 파손되거나 없어짐/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거나 남겨 옴
전화가 자주 오거나 호출기 확인 빈번/ 호출기나 전화 후 급격히 우울 증세
"죽고싶다"는 낙서 발견/ 자주 두통이나 복통 호소/ 용돈 요구 빈번해짐
친구들과의 교류 중단/ 가족에게 공격적 행동

- 왕따 피해자녀 지도하는 방법

따돌림 당하는 자녀에게 비난보다는 용기

피해 사실 확인 후 끝까지 해결해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심어 줌

주변에 도움 요청, 연계/ 피해 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유도

피해사항 진술서, 주변 친구의 증언서, 증거를 확보한 후 담임교사에게 지도 요청

피해 후 법적인 사항까지 잘 것을 대비하여 진단서를 받아 둠(신경정신과, 외과)

문제 해결 후에는 전문 치료 병행/ 부모로서 반성

- 왕따 가해 아이를 지도하는 방법

무조건 감싸기보다는 잘못을 지적

피해아이의 진술서와 친구들의 증언서를 확보하여 차분히 대화

피해 아이의 고통에 대해 함께 겸증하고 역할극 치료 부과

공격적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로 승화시키도록 도와 줌

(대인관계 심성훈련, 상담교육 프로그램 참가, 취미 활동 장려 등)

- 아이가 스스로 왕따를 극복하는 방법

왕따 당하게 된 원인을 분석한다

주도적으로 따돌리는 아이가 왜 자기를 찍었는지 분석하고 당당하게 그 이유를 묻는다

따돌리는 친구가 짖궂은 행동을 할수록 웃고 여유를 갖는다

따돌리는 아이에게 끝까지 그 부당함을 호소하는 메시지와 편지를 전달한다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한다

주변의 친구, 선배,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

② 학생자치로 풀어야 할 왕따

학교폭력의 해결에는 학생자치가 필수적이다. 학생들은 말을 하고 싶어한다. 학생회장이 직선제로 선출되고 학생회가 민주적으로 구성되어도 그에 걸맞은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치적 욕구를 담아낼 수 없다. 학생회의 예산을 공개하고 일정 부분 예산운용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축제의 전과정을 학생회가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¹⁰⁾, 교사들의 평가권을 존중해 이의제기 등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탈학교 현상을 일으킨다. 학교로부터 자치활동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교内外에서 비밀 동아리를 만들고 연대활동의 폭을 넓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¹¹⁾, 한편 견전한 또래활동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욕구불만을 학교폭력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10) 경기 안양여고 등에서 학생회 예산을 공개한 사례가 있고, 거창고등학교는 축제의 전과정을 학생들에게 맡기고 있다.

11) 6차교육과정이 실시된 1996년이래 자유로운 청소년 단체 활동이 위축되었다. 동아리 활동이 점수화되면서 학교 안의 서클활동에만 점수를 부여하자, 학교밖 청소년단체의 동아리 활동은 폐쇄되었다. 그나마 유일한 합법적인 학교밖 활동이 사라진 것이다.

학교자치의 무경험은 교사와 아이들의 의사소통 구조를 막히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교사와 아이들은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19세기로 가는 타임머신을 탄다. 선도부를 세워 용의복장 검사를 하고, 수업시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핸드폰을 압수한다. “왜 무슨 근거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신체를 통제해야 하느냐”는 아이들의 항변에 교사들은 누구도 답할 자신이 없다. 그런 문제를 고민하거나 아이들과 함께 토의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¹²⁾ 교사 자신이 학교장을 선출해보거나 학교운영에 참여하거나 자율적인 수업권이나 평가권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치가 무엇인지 알 리가 없다.¹³⁾ 교사들의 삶의 경험이 물 흐르듯 아래로 흘러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교육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이는 심각한 일이다. 교사와 아이들은 학교 생활주기(Life Cycle)에 따른 학칙제정에 공동으로 참여해 본 경험도 없다.¹⁴⁾

미국 일리노이아주 211학군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이 함께 참여해서 학칙을 만드는 풍토를 세웠다. 학칙 속에는 아이들의 생활주기를 고스란히 담았다. 일부러 자치를 학습하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자치가 이루어진다.¹⁵⁾ 이렇게 학칙을 만들 때 부터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 지역인사들이 모두 참여하여 정한 규정은 학생뿐 아니라 교장, 교사, 지역사회까지 지켜야 할 의무를 폭넓게 담는다. 지역의 주민들은 학칙에 명시된 순회 시찰 교육(경찰서, 소방서에서 선도교육 연계 프로그램 마련 등)에 기꺼이 응하여 학교교육이 360도 전방위 생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한다. 스웨덴 같은 서구의 국가들 역시 약속과 합의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칙을 신중하게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을리하지 않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1969년부터 이러한 공동학칙의 제정과 운영을 학부모 대표와 학생대표를 포함한 학교 운영협의회에서 토의할 것을 ‘기초학교학습지도요령’이라는 법적 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기까지 하다.

각종 생활문제가 야기될 때마다 모든 책임을 담임교사가 뒤집어쓰고 허덕이게 되는 현재의 우리 학교구조는 마땅히 변화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왕따 사건이 크게 불거지는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 최종 책임을 전적으로 학급담임에게 미루는 경향이 있다. 평

12)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89년 제정, 1991년 한국 비준) 제 16조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13)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라 교사는 정부가 정해준 교과서만을 갖고 수업을 하고(부교재 사용은 연간수업계획으로 겹칠을 받아야 한다), 평가 역시 OECD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100점 만점 백분율로 환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정부 스스로 교육의 전문성을 명시한 헌법제31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자격증으로 교장을 임명하는 정부의 관행으로 인해 교사를 스스로 교장을 선출하거나 제대로 학교운영에 참여해 보지 못한, 군대식 하향명령체계에 걸들여져 있다.

14)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 감독 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학칙)을 제정 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하향식 학칙 제정만 가능하게 한다.

15) 몇 가지 규정을 보자.
“9학년 벤과 메리는 다음 주까지 방과후에 이용할 수 있는 교내의 실내 농구장 출입을 금한다. 제이콥은 기말 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9학년 여학생을 성화통한 11학년 제임스는 학생회 주최 졸업댄스 파티 참가를 불허한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교감은 12시간 내에 학칙에 따라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소방벨을 누른 아이의 교육을 의뢰받은 소방서장은 일주일에 2시간의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벤과 메리는 5달러씩을 결고 몰래 즐겼던 내기 체스의 대가를 치렀다. 동급생인 이스트 제닝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부은 제이콥은 리포트로 대체할 수 있었던 기말시험을 직접 봐야 한다는 벌칙을 통고 받았다. 그 결과 자칫하면 섬머스쿨에 출석하는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 하급생 줄리엣에게 외설을 일삼았던 제임스는 가장 무거운 벌칙에 해당되는 졸업댄스 파티를 놓치게 되었다. 제임스는 한동안 연애하기는 틀린 것 같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흔히 일어나는 풍경이다. 학교행정가가 통고하는 학칙 위반에 대한 벌칙내용은 하나같이 아이들에게는 단호하고 아픈 생활영역에 속한다. 학칙이 포괄하는 범위는 곧바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생활의 범위(life cycle)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물론 학칙제정에 학생회가 여론조사를 하면서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소 위세 등등한 학생부장과 교감도,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호언하던 교장선생님도 추적 60분이나 그것이 알고싶다 등의 방송사 카메라팀이 들이닥치면 허허벌판에 홀로 세우듯 연약한 담임교사를 등 폐밀어 혼자 카메라 앞에 서게 한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기초적 기반이며 사회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최우선의 과제에 속한다. 학부모, 교사뿐 아니라 지역인사와 파출소장 아저씨, 동네 구멍가게 아줌마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학교에 모여 아이들의 교육을 함께 걱정하게 만들 때 가능할 수 있다. 자치를 담은 학칙을 제정하는 것은 한 사회의 정체성(identity)에 해당하는 문제다. 그러므로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그에 걸맞은 운영을 체계화시키는 것은 우선적인 과제이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의 법제화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확실한 개혁이며, 한번쯤은 헝클어진 우리 교육체계를 뒤흔들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조치임에 틀림없다.

③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맞는 아이와 때리는 아이는 폭력이 낳은 두 얼굴이다. 힘이 약해서 일방적으로 맞는 것은 명확한 폭력이고, 양쪽 아이 모두 문제가 있어서 시비 끝에 싸움을 하더라도 주먹다짐까지 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힘에 자신이 있는 아이가 먼저 폭력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때리고 맞는 행위는 교사와 부모에게 골치 아픈 문제거리다.

“너희들 둘 다 나쁘다. 싸우다니, 거기 모두 무릎 끓고 순들어.”

교사들은 흔히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며 양비론을 펼치기 일쑤다. 교사들에게는 아이들 간의 싸움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때리고 맞는 것은 둘 다에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은연중에 배어 있다. 그러나 폭력은 그렇게 간단히 치부될 문제만은 아니다.

면밀하게 살펴보면 막상 주먹을 뻗어 먼저 상대방을 치는 아이는 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폭력성에 걸들여져 있는 상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극한 상황이고, 대부분의 싸움은 힘센 아이의 주도로 끝이 난다. 그것을 적당히 ‘둘 다 나빠’라는 양비론으로 덮어두면 때리는 아이는 때리는 습관이 붙고 맞는 아이는 일상적인 폭력피해를 면할 수 없다. 때리고 맞는 아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나 교사 입장에서 폭력상황을 인지했으면 일단 증거 수집을 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피해 사항을 상세히 쓰게 한다. 맞은 이유와 장소, 시간을 육하원칙에 의해 기록하게 한다. 이 때 피해를 목격한 주변의 친구들을 함께 불러 재빨리 객관적인 증거나 증언을 문서로 채집해 놓는다. 시일이 지난 일이면 일기나 증언을 통해 정황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야만 가해 아이가 오리발을 내밀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양쪽 보호자를 초치해 화해를 유도할 때 그 증거로 인해 사과와 용납을 유도할 수 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해자 자녀를 둔 부모는 처음에는 미안해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 싶게 돌변하기 일쑤다. “그 애가 맞을만 했더군요” 하면서 폭력을 정당화시킨다. 집단폭력의 경우는 가해자 부모들이 연대하여 입을 맞추고 대응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오히려 언어 폭력 등 재폭력을 당하기 쉽다. 이렇게 되면 담임은 위축되고 억울한 피해자는 담임을 뛰어넘어 교장에게 가고, 교장이 사건을 은폐하면 교육청으로 달려가며, 그것도 효과가 없으면 교육부로 간다. 마침내 ‘그것이 알고 싶다’ 카메라가 교실을 찾는 일이 발생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 일이 벌어지면 학교는 더욱 가해자 편에 서서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게 된다. 담임교사가 입을 마음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그러므로 일파만파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초기에 담임의 현명한 지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 지도과정에서 입으로 말하지 않고, 확보된 진술서 등 ‘문서로 말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당되기 때문이다.

만 사태를 정확하게 수습할 수 있다.

폭력에 대한 지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힘에 의지하여 폭력을 휘두르면 대가를 치른다는 따끔한 교훈을 새겨주어야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다. 힘이 약해서 맞는 것도 억울한데 ‘둘다 나쁘다’며 사건을 호도하고 은폐하며, 두루뭉실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교사폭력’이고 ‘학교폭력’이다. 다음의 요약 사항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자. 단계별로 제시한다.



학교폭력 지도요령 7단계

- ▶ 일단 아이들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가해와 피해상황만을 냉정하게 체크한다.
- ▶ 초기단계에서 지도한 내용을 수집하여
문서로 남긴다.
- ▶ 가해자와 피해자 및 증인의 진술서를
반드시 확보한다.
- ▶ 가해 및 피해 결과를 물증으로 제시하여
학부모간의 치료, 배상을 우선 해결한다.
- ▶ 가해 및 피해의 동기를 파악하여
교육적으로 지도한다.
- ▶ 학부모에게 상세한 브리핑과 함께 협조를 구한다.
- ▶ 학급에 지도 내용을 고지하고 가해자는 사과를,
피해자는 위로를 주고받도록 한다.

(참고자료)

※ 부모가 알아보는 왕따 진단법

- 1) 소지품이나 비싼 옷, 운동화 등을 자주 잊어버리거나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
- 2) 몸에서 다친 상처나 멍자국을 자주 발견하게 되며, 물어보면 그냥 넘어졌다거나 운동하다 다쳤다고 얼버무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
- 3) 교과서나 노트, 일기장 등에 ‘죽어라’ 또는 ‘죽고 싶다’와 같은 폭언이나 자포자기 표현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
- 4) 용돈이 모자란다고 하거나 말없이 집에서 돈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
- 5) 풀이 죽고 맥이 없거나 입맛이 없다고 하면서 평소 좋아하던 음식에도 손대지 않습니까? ()
- 6) 두통, 복통 등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며 학교 가기를 싫어하거나 지각, 조퇴가 잦아지고 있습니까? ()
- 7)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려 하지 않거나 친구에게 전화가 오는 것조차 싫어 합니까? ()
- 8) 친구, 선배들에게 전화가 자주 걸려오고, 그때마다 난처한 표정으로 부모님의 눈길을 피하여 자주 불려나가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
- 9) 갑자기 전학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자퇴, 검정고시 등을 말하곤 합니까? ()
- 10) 집에 친구를 데려오지도 않고 친구 집에 놀러 가지도 않으며, 외출을 꺼립니까? ()
- 11) 버디버디 등 인터넷 대화가 부쩍 늘었으며, 말씨가 공격적입니다? ()
- 12) 갑자기 평소보다 성적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



※ 학교폭력을 진단하는 방법

- 1) 12개 문항 중 0개인 경우 : 양호
- 2) 12개 문항 중 1~3개인 경우 :
 - ①아이와 대화할 시간을 가져 확인해 본다. ②아이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준다.
- 3) 12개 문항 중 4~6개인 경우 :
 - ①사실 확인을 하고 학교폭력일 경우 학교선생님께 도움을 요구한다.
- 4) 12개 문항 중 7~12개인 경우 :
 - ①반드시 아이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고, 우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문제해결방법을 부모가 함께 상의한다. ②학교 측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 ③학교에서 해결방안을 내 놓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상담기관 전화상담을 한다.

-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주요 골자(2004년 8월부터 시행)**

1. 학교폭력을 학교内外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협박·금품갈취·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로 정의함(제2조 제1호).
2.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의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함(제4조).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함(제6조 제1항).
4.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 하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둠(제7조 제1항).
5.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9조).
6.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제10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 학교장이 위촉(제11조)
 - 위원의 자격
 - .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 . 초·중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
 -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 . 해당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 자치위원회의 기능
 -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 . 피해학생의 보호
 -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 조정 등
7. 학교의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며 학교 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하여야 함(제12조).
8.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함(제13조).
9.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보호조치(①심리상담 및 조언 ②일시보호하는 일 ③치료를 위한 요양 ④학급교체 ⑤전학권고 등)를 취할 수 있음(제14조).
10.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①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②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③학급교체 ④전학 ⑤학교에서의 봉사 ⑥사회봉사 ⑦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⑧출석정지 ⑨퇴학처분)를 취하여야 함(제15조).
11.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기간은 1월임(제16조).

12.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함(제18조).

1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의 관계자들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형에 처함(제20조).

☞ 시행령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항 목	시행령의 방향/개정 법률 사항	비고
학교폭력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범주에 반드시 학교밖의 청소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对교사폭력, 對기물파괴폭력의 포함 	학교 폭력 행위
관계중앙행정 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중앙행정기관은 문화관광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정통부, 법무부를 포함한다 - 6조②항…등에 의거, 의견수렴 기관의 범위는 교육시민단체, 학교폭력전문단상담단체, 교원노조, 학생단체 등을 포함한다. 	의견 수렴 기관의 범위
기본계획의 수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시 기획위원회는 반드시 연1회 이상의 설문조사(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 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하며, 당해 12월 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 	학교 및 국민 의견 수렴
기획위원회의 설치·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근거
기획위원회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위원회에 일선의 교사, 청소년지도자가 포함되도록 한다 	
교육감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시행계획은 새학기 전년도 11월 1일까지 수립하여 단위학교에 당해년도 12월 1일까지 송부한다 	시행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부서는 학교급별로 두되 부서장은 반드시 외부 개방직으로 한다 	개방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발생 시의 경과 및 결과보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는 학교평가에 반영한다 	시행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학부모, 학생의 진상조사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원터치 시스템을 개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실시계획 수립은 새학기 전년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통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발생빈도의 통계처리 및 보고는 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을 위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학 및 퇴학처분에 따른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증한 동일계열로 전학(인문계-인문계, 실업계-실업계 등) 	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기획위원회에의 보고는 피해빈도 위주로 한다 	보고 근거

항 목	시행령의 방향/개정 법률 사항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교사가 학교폭력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한다 -청소년단체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피해자측이 추천하는 인사가 자치위원회에 포함되도록 규정한다 -자치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의견개진, 참관 등을 허용한다 	자 치 위 원 회 의 심 의 사 항 등
자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자치위원회의 교원위원은 교무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1인을 선출하여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청소년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자’는 가급적 청소년단체의 추천을 거치자로 위촉한다 ·비밀누설금지 범위는 의사의 비밀 요청 의견 진단서, 피해자의 요구 등을 근거로 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회의록 비공개 사항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목록으로 한정한다 	설 치 운 영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실의 규모-기존 상담실의 규모를 반영한다 	
상담실 및 전문상담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외부 전문가가 학교에 근무하도록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정신과 전문의,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을 초빙강사, 자원봉사, 특별활동 초빙교사로 활용하도록 한다 -현행 상담교사 양성과정 및 기존 상담교사 연수에 학교폭력 상담교육을 추가한다 -전문상담 교사의 범주에 상담교사 자격증이 있는 보건교사를 반드시 포함한다. -학교내 전문상담에 모든 교사가 상담권을 가지도록 명시한다 -학생들에게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선택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선택권을 보장한다 	상 담 교 사. 상 담의 정 의
책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교사의 책무는 행정적 업무로 한정한다. 그 이외의 독점적 지도권, 상담권 등을 배제한다. 이는 타교사의 학교폭력 지도권을 침해하거나 규제하지 않는 범위에서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책임교사의 자치위원회 편입여부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책임교사는 교무회의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하여 학교장이 임명하며, 책임교사의 자격요건은 보건교사를 포함하여 경력10년 이상의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사립학교의 책임교사 수당은 국고에서 지급한다 	책 임 교 사의 임 명 및 책무

항 목	시행령의 방향/개정 법률 사항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교육은 학교폭력발생시에 진행할 수 있다 	추 가 교 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교육과 예방프로그램의 구성은 학교교육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등은 1개학년(선택) 2학기를 주당 1시수 1단위(연간 32-34시간)로 배치하며, 가급적 1학년 과정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초등은 2개학년(선택) 4학기를 주당 1시수 1단위(연간 32-34시간)로 배치하며, 가급적 저학년에서는 1학년, 고학년에서는 4,5학년 과정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교재제작은 유아용, 초등 저학년/고학년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으로 한다 	예 방 교 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단체 및 전문가에의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단체 및 전문가-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경우는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관련단체의 추천으로 그 자격을 정한다. ·전문단체 및 전문가 양성 등 교육기관 선정은 단위학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위탁교육의 경우 외부강사에게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한다 	
피해학생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학생이 가해자로부터 치료 및 보호에 관한 비용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는 그 비용을 지급한다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결석하여 시험에 결시할 경우 성적을 전시험 대비 100% 혹은 근거가 없을 경우는 운동부 선수의 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보 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선도규정에 위탁교육, 전출 명령 등을 추가한다 -가해학생의 선도 위탁교육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한다 -의견진술 부여방법-자필 진술서 및 서명된 타이핑 진술서로 한다. 다만 결석하여 연락이 안될 경우는 문서로 고지한다. 	고 지
분쟁조정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한다	비 용
신고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 신청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치위원회에 신청한다 -신고에 대한 계도는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학교장 책임 하에 집행한다. -신고를 받았을 경우, 책임교사는 24시간 내에 담임교사와 학교장, 자치위원장에게 보고 및 통고한다. 	신 고



1. 청소년 건강문제와 보건교사의 역할

1) 건강은 총체적인 개념

건강 (Health)하면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육체적인 건강을 떠올리곤 하지만, 그러나 건강의 개념은 WHO(세계보건기구)의 정의¹⁶⁾에서도 보여지듯 육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 건강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이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옛 구호조차 소박하나마 건강의 총체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고, OECD 여러 국가들 역시 이미 수십년전부터 건강의 개념을 확대하여 바라보고 있다. 또한 건강의 척도도 가시적인 질병유무로 건강/불건강을 나누던 과거와는 달리, ‘삶의 질’의 수준에 따라 연속선상에서 바라보게 되면서, 단지 아프지 않은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 높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추구하고 있다. 물론 그 바탕에는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진 사회경제적인 성장과 한편 인간의 삶의 질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지속되어 왔다고 하겠다.

건강의 개념		건강/불건강 여부
과거	육체적으로 아프지 않은 상태	질병없음 / 질병있음
현재	육체적 · 정신적 · 사회적 · 영적으로 건강 “최적의 안녕상태”	불건강←————→건강

2) 학교의 건강요구는 보건교사의 역할 전환 요구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건강을 육체적인 영역으로, 또 그 척도를 건강/불건강으로 바라보는 고정관념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역시 매우 협소하게 고정되어 있다. ‘학교에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아픈 환자가 생겼을 때 이에 대처하는 일’로 이미지화되어 있고, 이에 더하여 최소한의 건강 이상에 대한 스크린과 검진업무, 간헐적 비정규보건교육, 행정적 환경위생을 권장하는 것이 고작인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학교 청소년들에게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스트레스, 비만 등 성인병, 학교폭력, 약물오남용(흡연과 음주 포함), 왕따, 성폭력 등의 건강문제가, 단순히 질병유무를 넘어서 현재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에 비추어, 더 이상 이같이 협소한 역할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실제 학교에서 이같은 건강문제를 접할 기회가 많은 보건교사가 그 전문적 판단에 따라 중재를 시도하려고 해도, “건강만 신경쓰면 되지, 왜 다른 일에 관심이 많은가?”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거나, 심지어 이를 월권으로 치부하여 아예 원천적으로 접근을 막으려 드는 한심한 상황까지 적지 않다. 학교 내 모든 인력, 심지어 학교 밖에서의 접근 가능한 인력을 적극 참여시켜도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내 유일한 의료인이자 교사로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전문 인력을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로 가두어 억압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을 침

16) WHO 정의 : 건강은 육체적·정신적·사회적·정신적으로 최적의 안녕(well-being)상태이다

해하고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학교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시급한 건강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신속하게 그 전환을 모색해야 할 일이다.

3) 교육·보건 당국은 상식이 통하는 정책입안으로 약속이행을!

그나마 육체적인 건강문제도 예방이나 교육 등 적극적인 역할은 간과하고 '사후처치' 위주로 일관하여 온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다. 이는 일차적으로 보건교사들이 주체적으로 "역할 찾기"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반성해야 할 일이라는 하지만, 건강의 개념에 대한 후진적인 사회인식에 편승하여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보건교육과 공공의료등 제도적인 토대 없이 상품의료의 대상으로 국민을 방치해 온 보건복지부의 사후처치 위주의 병원중심 보건의료정책에 그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¹⁷⁾ 또한 주지과목 중심의 입시교육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삶의 기본이 되는 보건교육에 대한 학교현장의 절박한 요구를¹⁸⁾ 기반적 '범교과' 논리로 교묘하게 무시하고, 보건교사의 역할을 축소·왜곡시켜 온 교육당국¹⁹⁾ 상충 관료들(특히 특수교육보건과의 보건담당 관료들)의 반 현장적 반복지적 교육정책의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앞으로 교육·보건 당국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상식이 통하는 정책 입안을 하도록, 그래서 지난 2002년, 노무현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약속하였던²⁰⁾ 보건교과

17) 2001년, 전교조 보건위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학교보건의 발전 방향과 보건교사의 역할" 토론회 발제문(우옥영)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18) 보건교사들은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2. 11.9 "보건교육정상화 결의대회"에 1천2백명이 모여서 보건교과 설치, 보건교사 확대 배치, 학교보건지원센터 등을 노무현 정부 대선공약으로 반영하였던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이 공약은 교육부에서 어느것 하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으며, 교육부가 학교보건위원회에 제출하였던 것은 수조원을 들인 급식개선방안으로 학교보건지원센터(대선공약이었던)대신 급식지원센터가 제출되었을 뿐이다. 이는 교육부의 보건직 관료들의 권위주의적·반현장적 관료주의가 얼마나 강고한지를 드러내 주는 한 단면이라 하겠다.

19) 지난 2001년 당시 김화중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 교육상임위에 "보건교사로 하여금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학교보건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여 부결되었다. 후에 특수교육보건과 김상욱 서기관, 그리고 교육과정정책과 최성식 장학사(체육)를 방문하여 이에 항의하자, 범교과로 하자는 것이라는 기만적인 논리를 표명하였다.

20) 보건교사관련 2002 민주당 대통령 선거공약안

*. 23. (학교보건교육의 강화와 학교급식의 내실화) 학교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학교급식을 내실화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학생들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예방적 건강교육을 위해 보건교과를 설치하고, 보건교사를 확대 배치하여 학교보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보건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의료 및 학교보건의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보건 부분에 기재된 보건교사와 관련된 공약입니다.

- 6,000여 명의 학교 보건교사에게 정신보건전문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전문 상담교사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 청소년 출연, 학교폭력, 성 문제, 입시 스트레스 등에 대응하겠습니다.
- 초·중·고등학교에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학교보건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설치, 보건교사 확대배치, 학교보건지원센터 확립을 촉구하고, 정규보건교육과 다양한 건강관리, 상담활동이 가능하도록 여론을 만들고 힘을 모아야 할 일이다. 보건교사에게 정신보건전문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지키게 해야 한다. 일단 여기서는 보건교사와 학교폭력으로 내용을 한정하여 현황과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학교폭력과 보건교사

1) 학교폭력과 청소년

청소년기는 또래문화로 특징지워 지는 시기다. 이 또래들의 강력한 결집력을 또래끼리 모여서 서로 부딪치며 사회적인 경험을 통하여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돋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들이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절하기 힘든 상황에 부딪쳐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매우 크다.²¹⁾ 특히 서로 수용할 수 없는 차이를 느끼게 되거나 조정이 불가능한 갈등이 발생할 때, 가정과 사회에서 배워온 대처기전이 적절하지 못하면 아주 심각하게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가정과 학교의 수직적인 문화 토양이 다양성 보다는 획일성에,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폭력적으로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억압하는 경향이 강한데다, 이를 극적으로 확대하여 상품화한 폭력적인 매체들이 홍수처럼 아이들을 휩쓸어 모방심리를 자극하고 있어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 더구나 청소년의 삶의 질이 적성을 무시한 입시공부와 성적이 부당하게 자신의 존재를 서열화하는 잣대가 되고, 최소한의 잠잘권리, 먹을 권리, 휴식의 권리조차 정당하게 누리지 못한채²²⁾ 하고 싶은 일은 커녕 일상의 스트레스조차 제대로 해소할 길이 없는 상태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아이들이 억압되었던 분노를 약한 출구를 통해 폭력적으로 폭발해 버리게 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일일지 모른다. 여기에 정보화 사회와 사이버문화로 즉석 해결에 익숙해진 '인스턴트 문화', 그리고 수입을 확대할 청소년의 일자리나 노동권 하나 변변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품구매 충동을 과다 자극하는 소비문화도 함께 얹혀 학교폭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21) 신일용, "청소년폭력에 대한 정신과적 진단", 청소년은 아직 행동을 통제하는 사고력이 충분히 따라오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상 청소년에서도 가끔 의도하지 않은 폭력으로 나타나는 예들도 있다.

22) 2001.9. 전교조 보건위원회 실태조사 중에서 발췌

- 고교생의 평균 수면 시간- 6시간 7분, 고3은 5시간 27분(아침에 스스로 잠에서 깨지 못하는 고교생 68.5%)
- 아침식사를 전혀 안하는 학생이 25.1%
-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성적(입시) 74.8%, (진로(8.8%), 돈 (5.0%), 이성(3.8%), 외모(2.1%), 가족(1.7%), 친구 (1.6%) 등
- 시험 기간 스트레스 - 심하다. 51.3%
- 스트레스 해소방식- 잔다 32.8%, 그냥 참는다(18.2%),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낸다(14.4%), 음식을 먹는다 (13.0%), 술, 담배(9.8%) 등
- 시험기간 불안·짜증 61.2%, 소화불량 37.8%, 두통 35.4%, 복통(설사) 16.3%, 불면증 10.6%, 변비 8.3%, 입병 8.3%, 열 8.2%, 생리 불순 4.3% 등
- 스트레스 해결 방법은 그냥 참는다 62.3%, 좋아하는 일(25.8%), 악국에서 약을 사 먹는다(9.2%), 병원치료(2.8%)
- 요통 여부 82.9%(늘 28.8%+몇개월째 15.2%+오래공부하는날만 38.9%)
- 눈의 피로 통증을 느낀다는 응답이 89.6%(자주 38.0%+가끔 51.7%)

2)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의 현주소

학교폭력이 발생할 뜻자는 이처럼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에 대한 대처수준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이다. 일단 심각한 형태로 외부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파악조차 제대로 하기 어렵거나 설령 수상한 전조증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에 적절한 대처를 할 만큼 학교는 대개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① 폭력에 대한 왜곡된 태도와 성역할

여기에는 “아이들이 다 싸우면서 크는 거지”하는 폭력에 대한 지나친 관용성과 “사내 자식이 그까짓 일로...”하면서 피해자의 두려움을 과소평가하거나 심지어 비난하기까지 하는 남성성역할에 대한 왜곡된 입장도 한 몫을 한다. 특히 후자는 아이들에게 널리 내면화 되어, 자발적으로 상담을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일렀다”, “남자답지 못하다”고 치부되기 일쑤이며, 바로 그 이유만으로도 왕따가 되거나 더 심한 폭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숨기게 되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만들며 상황을 악화시키게 하는 한 요소다.

② 과도한 수업시수와 상담이 어려운 환경

교사들의 과도한 수업시수와 바쁜 잡무 역시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하는 한 요소다. 상담은 학생의 마음이 내키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과도한 수업으로 시간을 맞추기도 쉽지 않고, 또 시간이 있다 해도 대개 다수에게 열린 공간에서 늘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교사에게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의 아이들이 상담을 신청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일이다.

③ 수직구조와 맞물린 담임중심 생활지도론과 기계적 업무분장론

교육부-교육청-학교장-교감-부장-교사-학생으로 이어지는 하향적 수직구조에서의 하향식 의사소통 또한 교사들간, 부서간, 그리고 교사-학생간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여 문제를 악화시키기 쉬운 주요요인이다. 여기에 통념적인 담임중심 생활지도론이 맞물리면, 담임 이외의 교사들은 아무리 학생들이 원해도 문제에 개입할 권한과 책임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기 일쑤다. 학생들은 삶든 좋은 우선적으로 담임을 찾아가 상담을 해야 하는 것이며, 대개 비담임은 이런 관행 앞에 교사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의무와 권리를 무장해제 당하기 마련이다. 또 기계적인 업무분장론도 문제인데, 앞에서 언급한 맹목적 담임주의를 비롯하여, 상담은 상담실에서 하는 것이니 다른교사(특히 보건교사)가 하면 안된다는 월권론, 개인적인 상담이 아닌 사안(특히 폭력이나 비행그룹 관련 사건)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알게 되면 생활지도부로 넘겨야 한다는 형사론이 그것이다. 요는 학교폭력 문제를 대처함에 있어 학교가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욕구와 정서, 현실적인 조건을 존중하지 않으며, 공감과 라포(rapport)형성이라는 상담의 기본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불합리한 관행에 따라 수직적이고 행정편의주적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3) 보건교사가 학교폭력에 민감하게 되는 지형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교사는 그 누구보다 학교폭력에 민감하게 되는 지형에 놓여 있다.

①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학교 안에 상담실이 있다고는 하지만, 상담을 전담하는 교사가 상주하는 것도 아니거나,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적극적으로 상담을 신청하기가 쉽지 않고, 혹 상담을 신청했다 해도 그 사실이 가해자들에게 알려지면 심각한 보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예민한 피해자들은 대개 상담실을 방문하기보다는 보건실을 찾는다. 폭력이 발생하면 보통 신체적 상해를 입게 마련이고, 피가 나거나 멍들고 부을 때 (상담이 아닌) 치료를 받으려 보건실에 가는 것은 가해자로서도 보복의 명분이 서지 않는 자연스러운 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당장 직접적 폭행이 가해지지 않았다 해도, 잠재적으로 그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학교폭력이나 왕따의 초기, 혹은 사후 후유증-의 경우에도 힘든 상황에 닥칠 때, 복통이나 두통 등 간단한 ‘신체적 증상’을 빌미²³⁾로 언제든지 쉬러 올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② 특수한 만남- 상담자의 전문성

곧 보건실에서 보건교사와 학생의 만남은 응급처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하게 알려져 있는 통념과는 달리 복잡한 숨은 역할을 요구받곤 한다. 일단 학생들을 관찰하여 빠른 판단²⁴⁾을 해야 하는데, “장난하다가 그랬다”는 학생들의 흔한 진술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단순사고인지 학교폭력(왕따)과 관련된 사고인지, 학생들의 상태가 심각한 공포나 분노 혹은 살기가 있는지 아닌지(심각한 경우 곧 보복이 있게 됨), 가해자를 분리만 시킬 것인지 담임(혹은 생활지도부)과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받아야 할지, 병원을 보내야 할 것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들이 그것이다. 때로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도 그럴 수 있지만, 특히 단순사고가 아닌 경우 감정이 얹히게 되기 때문에 추후 심각한 형태로 중폭될 수 있으며, 자칫 법적 소송 등 험악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초동대처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상처나 증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신뢰감을 형성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이나 왕따를 당한 학생들은 대개 극한 두려움이나 위축으로 침묵하거나, 일렀다는 소문이 두려워 ‘폭력(혹은 왕따)이 아니라 장난’ 등으로 둘러대기 마련인데, 정성스러운 돌봄과 치료의 과정을 섬세하게 잘 활용하면 비교적 자연스레 안도감과 신뢰감을 가지게 하여 마음을 열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말을 못하고 꿈끙거리던 상황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정황과 심리상태를 드러낼 수 있게 되면, 일단 더 심각한 상황으로의 악화를 막고 대책을 모색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는 것이며 이는 상담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하여 학생과 좋은 관계가 형성되면 이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주변관계의 안정과 학생자신의 적절한 대처능력의 개발 등-상담실 및 담임 등과 연계를 모색하며 지지를 계속하게 된다.

③ 보건교사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갈등

그러나 이 과정은 보건교사가 학교폭력을 둘러싼 학생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의식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쉽지 않은 일이다. 보건실에 기타의 건강문제로 찾아오는

23) 최근 모 고등학교에서 자살한 한 학생도 죽기전에 한시간 동안 보건실에서 누워있었다. 사실, 보건실을 찾는 아이들의 상당수가 육체적질병을 내세우고 있지만, 보다 보다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사회적 문제로 오는 것임은 시간을 두고 아이들을 집중하여 관찰하는 보건교사들의 공통된 진술이다.

24) 직접적인 폭력으로 학생들이 보건실을 찾아오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끝날 무렵이 많은 데다, 대개 그 시간에는 일반적인 건강문제나 외상으로 보건실을 찾는 아이들이 많아 봄비는 시간이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을 요구받는다.

학생들의 수도 만만치 않고(특히 대도시의 거대학급), 보건교육, 신체검사 등 건강평가와 검진, 기타 공문처리 등의 잡무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다른 업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도 상담을 한다는 것은 학생에 대한 애정과 교사로서의 사명감에 충실히 하려는 끼거운 노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려는 교사일수록 수직구조화의 지침과 맹목적인 담임중심생활지도론, 기계적 업무분장론에 부딪치면 엄청나게 상처받기 쉽다. “왜 상담실이 있는데 보건교사가 상담을 하느냐”, “왜 담임이 할 일에 보건교사가 주제님계 나서느냐”는 우문을 넘어선 눈총과 질타 앞에 한 학교에 혼자뿐인 보건교사들은 외로이 벌거벗겨지는 것이다. 보건교사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은 함께 하기 위한 모색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학생들과 보건교사 사이에 특수하게 형성된 신뢰감이 그대로 상담교사나 담임교사에게 이전되기가 쉽지 않고, 또 학생들이 “절대 다른 선생님들께 말하지 말아 달라”고 우기는 경우도 많아서, 그 모색조차 실은 상당히 신중하고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법이다. 다행히 이를 이해하는 교사라면 합리적으로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더 지배적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실 양성과정에서 보건교사만큼 상담능력을 훈련받은 교사들도 흔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회와 학교는 그동안 이를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고 보면 보건교사는 전문적인 판단과 학교의 관행사이에서 심각하게 갈등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칫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편의적으로 학생들을 상담실·담임교사에게 급하게 인계하다가 학생들을 상처입히는 한편 학생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처음에 상담활동에 의욕을 보이던 보건교사라 해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모르는 체 조용히 지내는 것이 편하다는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구조와 관행은 이처럼 소신있는 교사일수록 고통스럽게 하여 소중한 사기를 뿌리 채 말려버리는 독소이자 한편 교육을 왜곡시키는 적당주의와 보신주의를 듣는하게 키우는 양분인 것이다.

④ 학교의 대처와 법적 소송 등의 문제

최근 경기도의 한 보건교사의 죽음을 통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보건교사들의 일상은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과는 달리 살얼음을 딛듯 아주 조심스러운 상황에 종종 처하게 된다. 단순한 육체적 이상이나 사고일 경우에도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응급처치의 적절성, 신속한 이송여부, 책임성이나 보상 문제 등으로 그럴 수 있거니와, 무엇보다 학교폭력(교사 폭력, 학생간 폭력 모두)이나 왕따와 관련된 경우에는 특히 감정적으로 예민해 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보건교사의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초동대처가 이후의 후유증을 좌우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학부모는 감정이 절제되지 않아 소리를 지르며 거센 항의를 하는(교사에게, 혹은 가해자에게) 등 심각한 반응을 보이고, 가해자의 부모는 “아이들이 그럴수도 있지”하는 지나치다 못해 뻔뻔하기까지 한 관용성(?)과 여유를 보이거나 나아가 피해자의 품행을 문제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곤 한다. 또 담임교사들 역시 서로 자기반 아이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주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혹은 온정적으로 잘못을 감싸려 드는 일이 적지 않다. 만일 평소에 학교운영에 대한 불신이 커서 학교와 교사-학부모와 학생사이가 신뢰롭지 못할 때, 이러한 문제들은 대단히 증폭되어 발전할 수 있으며, 이때 자칫 그 불똥이 약한 고리인 보건교사에게로 될 수 있다. 앞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논의기구, 법적 책임 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사례1) 서울의 k 모 중학교 보건실에는 소위 문제아라고 지칭되는 아이들이 비교적 많이 찾아온다. 보건교사는 그 아이들의 특별한 이유없는 방문으로 다소 업무의 지장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지만, 워낙 엉뚱한 곳으로 위험스레 잘 뛰는 아이들이라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 문제를 악화시킬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특히 담임교사와 관계가 좋지 않은 몇몇 아이들은 이렇게라도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몇몇 아이들이 한꺼번에 학교를 나오지 않아 수소문해 본 결과 이성문제가 얹혀 한 아이를 집단으로 폭행을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폭행을 당한 아이쪽에서 억울하다며 선배들을 동원하여 때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어 무서워서 학교를 나오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날 학교를 나오지 않은 아이들이 갑자기 보건실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를 발견한 주변교사들이 이를 마치 월권으로 치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진술서를 받고 상담을 했던 교사는 여럿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아이들이 보건교사를 찾아왔고, 그 장소가 보건실이었다는 이유였다. 당일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담임교사, 생활지도부장 등과 연락을 취해 보았지만, 마침 당일 그 두분이 다 출장중이었다. 아이들을 잘 달래서 학교를 나오라고 하고 돌려보낸 다음날 다시 아이들이 바로 교실로 가지 않고 보건실을 찾아왔다. 아이들에게 일단 (학교의 관행대로) 담임교사에게 가라고 설득을 하여 간신히 한 아이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워낙 담임을 무서워하는 한 아이는 끝까지 가지 않고 베티니 참으로 곤란했다. 하여 담임교사를 찾아가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지만 무려 3번을 찾아가도 담임은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한마디로 냉담하게 대했고, 승진을 꿈꾸며 교장, 교감의 의사를 잘 파악하던 그 담임교사를 총애하던 교감선생님은 담임을 노골적으로 편들고 나서며 “아니, 보건교사가 아이들을 내쫓아야지, 왜 거기에 놔 둬?” 하면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기까지 했다. 우여곡절 끝에 아이들은 그 후 학교에 나오게 되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었던 보건교사가 교감선생님을 찾아가 “어떻게 교사가 자기를 찾아온 아이들을 내 쫓아야 한다고 하십니까?” 하고 항의했더니, “아니 자기가 상담교사도 아닌데 왜 나서? 자기 할일이나 잘 하면 될 일인지”라는 대답을 하였다. “모든 교사가 여건이 안되어서 상담을 못하는 게 문제이지, 격려는 못할망정 어떻게 교사로서 양심을 저버리라고 하는가?” “상담 업무분장은 더 잘하자고 있는 것이지, 나머지 교사들이 상담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고 항의를 했지만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았다. 이후 그 보건교사는 아이들이 무엇을 상담해 와도 교감이 하던 말과 주변교사들의 눈총이 떠올라, 아이들을 위해서 상담을 해야 할지, 그냥 말없이 편안하게 모른척하고 지내야 할지 항상 갈등을 하게 되었다.

사례2) 서울의 s모 중학교 보건실에 1학년 학생들 몇 명이 몰려와. 장난을 하다가 부딪쳤는데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왔다고 했다. 어떻게 다쳤는지 물어보았더니 학생들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았고 따라서 아이들이 자꾸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미심쩍어, 상처치료를 위해 서라고 말하고 다친 아이만 남기고 나머지 아이들을 모두 보냈다. 드레싱을 하고 얼음찜질을 하면서 다친 아이에게 아프냐고 했더니 아이가 “아프다”고 하여 병원으로 가 보자고 했더니 “안아프다”고 했고, 다시 어떻게 하다가 다쳤는지 묻자 “장난하다가 그랬다”고 하다가 종내는 “다 내 잘못 때문”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오랜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인하게 된 것은 아이가 초등학교 5,6학년 때 전학 온 이후 심각한 집단따돌림에 시달리며 간헐적으로 폭력을 당해 왔고, 오늘도 아이들이 놀리다가 밀어서 부딪쳤는데 아이는 그 이유를 다 자신의 잘못 때문으로 몰아 부치며,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점이었다. 병원으로의 이송을 위해 학교에 오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초등 저학년일 때 아이가 가위를 친구에게 던진 사건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아이들과 싸우면 무조건 못하게 하고 혼을 냈으며 네 잘못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다고 하셨다. 이에 가급적 아이를 비난하지 말고 힘들어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것을 권유하였고, 한편 아이의 상태가 가능하다면 상담실이나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후 교감선생님은 상담실에서 교육청에 바로 연락하도록 하여 아이가 그 상담실을 다니도록 하라고 했고(아이의 상태와 조건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할 일을 찾기보다는 다소 기계적으로 상담가와 연결시키면 된다고 봄), 담임교사에게 상황을 이야기 했으나 다소 불쾌한 뉘앙스로 “일단은 내가 알아서 해 보겠다”고 하면서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상담실에서는 원래 예정된 1학년 집단상담을 그 아이가 속한 반을 먼저 하는 노력을 보이기는 했으나 담임이 알아서 하겠다니 더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은 보였다. 보건교사의 전문적 판단은 분명히 그 아이에게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주변의 지지가 섬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학교내의 역학관계는 누구의 탓인지 그 아이에 대한 더 이상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사례3) 서울의 H모 중학교의 보건교사는 이를 동안 머리가 아프다며 찾아온 2학년 은영이를 검진한 결과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어 단순두통으로 보고 타이레놀을 처방하였다. 그러나 아이가 자꾸 수업하러 가지 않으려 하고 보건실에 누으려 하는데다, 가끔 한숨을 쉬기도 하여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좀 잠을 못잔데다 피곤하고 아파서”라고 대답했다. 마침 다른 보고업무로 바빴던 보건교사는 두 시간 동안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아이를 그냥 보내려다가, 혹시나 하여 무슨 일이 있느냐고 말을 걸었고, 속이 타도록 한 참을 망설이던 아이는 마침내 울먹이며 이야기를 꺼냈다. 평소에 같이 몰려다니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건방지다면서 교묘하게 자기를 몰아부치고 뒤에서 자기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다녀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엊그제 그 아이들이 몰려와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그냥 “없다”고 했더니, 한꺼번에 달려들어 가방을 뒤지고 핸드폰을 찾아내더니 “버릇을 고쳐 놓겠다”고 하였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자기를 폭행했고(발로 머리를 밟았다) 저녁에는 집에까지 쳐들어와 (마침 부모님이 맞벌이라 집에 아무도 없었다) 폭행을 하고 기물도 짓밟았다는 것이다. 당장은 아이가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 것, 또 학교에서나 귀가 길에서나 다시 맞게 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 문제여서, 아이를 안정시키고 부모에게 연락을 한 후, 다른 몇몇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집이 아닌- 병원으로 아이를 호송했다. 머리와 몸의 타박상을 확인한 부모는 가해 학생들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기대만큼 대답을 받지 못했고, 마침내 경찰서에 고소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고소취하를 전제로 가해자와 그 부모들이 구두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막상 고소가 취하되자 “어떻게 같은 학교에 있는 학생끼리 고발을 할 수 있느냐, 원래 애가 문제가 있었다던데...”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인 은영이가 문제가 많다는 소문을 돌렸다. 가해 학생들도 노골적인 폭행은 더 이상 없었지만, 그러나 교묘하고도 모욕적인 방식으로 은따(은근히 따돌리는 것)를 계속했다. 처음에는 매일 울면서 전학을 가겠다는 등 이 상황을 회피할 방법만 찾던 은영이는 그러나 상담과정에서 힘든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따돌림 관련 서적들을 탐독하면서 점차 덤덤하게 견디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새 학기에 들어오면서는 거의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했다. 비록 마음의 상처가 적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하여 은영이는 “책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접하고, 또 혼자있는 시간들을 통해 더 어려운 처지에 처하여 이겨낸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었다”면서 “스스로도 성장했다고 생각된다”고 표현할 정도로 좋아 보였다. 그 후 고등학교에 진학한 은영이가 밝은 모습으로 가끔 찾아와 이런 저런 일상을 재잘거리는 것을 보면 보건교사는 참으로 다행스러웠지만, 그러나 가해 학생들과 제대로 관계회복을 시켜낼 수 없었던 것은 두고 두고 마음에 걸리는 일이었다.

3. 학교폭력의 극복을 위한 제언

1) 학생의 상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상담에 전념할 전문상담교사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일단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업무분장은 상담을 더 잘하기 위하여 교사들의 고유한 상담활동을 지원하는 가운데 전문화를 시도하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모든 상담을 상담교사 1-2인에게 한정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위에서 지적했던 바, 담임제도 역시 그렇다. 더구나 상담은 그 본질 상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내담자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1천-2,3천명에 달하는 도시의 거대학교일수록 학생들의 상담을 상담실에서 다 감당할 수 없는데다, 담임교사 역시 주당 20-30시간 가까운 수업과 기타 자질구레한 일들에 떠밀리다 보면 학교폭력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특수한 문제들을 혼자 다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 보건교사 역시 상병자 관리와 응급처치, 기타 잡무 등에 시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보건실에서의 내담자와의 만남이 신체접촉이나 치료를 통한 신뢰감·친밀감 형성이 용이하고, 기타 안정된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으로 확보되는 등, 상담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내담자의 마음을 움직이기 좋은 공간이다. 요는 더 이상 어른들의 편의에 따라 기계적으로 아이들을 나누려 들지 말고, 학생들의 요구가 있고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 학생의 상담 선택권을 보장할 것과 모든 교사에게 (헌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너무도 당연한)상담의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²⁵⁾

2) 대내외적으로 체계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

학교폭력의 못자리가 광범위하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역시 전방위적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폭력을 미화하거나 방관하지 않는 사회분위기가 중요하며, 힘을 앞세운 폭력적·권위적 해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사회 제 분야의 수평적인 구조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한편 방송이나 언론들이 폭력을 이용하여 매체의 인기율을 높이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모니터를 통한 폭력지수 측정과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공간을 확대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호기심의 충족, 건전한 만남이 가능하도록 하고,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적극 마련하여 건전한 소비문화가 가능한 토양을 일구어 내야 할 것이다. 또 청소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의 경우, 청소년이나 주위에서 조사를 의

²⁵⁾사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사의 전문성, 교육기본법과 보건복지부가 보장하는 보건교사의 전문성에 비추어 상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을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지나가던 소도 웃을 기막힌 일이지만, 그러나 관료행정과 기계적 업무 분장론이 교권을 침해하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를 시행령에 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뢰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하며,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기타 청소년 폭력이 발생했을 때 쉽게 연락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공동학칙제정을 시도해야 한다.

특히 학교의 변화가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인데, 큰 틀에서 입시교육의 인간화교육으로의 전환과 수직적인 교육구조의 수평적 개혁-학교자치-이 우선적 과제이며, 특히 학생회 법제화를 통한 학생들의 발언권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는 상부의 지침과 감사에 촉각이 서 있어 학생들이 보내는 신호에 둔감해져가는 교사들을 학생들의 요구에 민감해지도록 바꾸는 중요한 개혁이 될 것이다. 사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역시,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전의 다른 사안들처럼 현장에서 왜곡될 수 있다. 교육청에 강력한 담당부서가 만들어지면서 또 현장의 교사들이 실질적인 상담활동보다 공문과 지침, 보고에 연연해하게 되면, 막상 학교현장의 구체적인 요구는 또 뒷전으로 미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얼마전 교육부 장관의 발언처럼 학교폭력을 교사평가에 반영하는 상황이 온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학교폭력을 은폐하여야 할 것이니, 이는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구조의 수평적개혁과 함께 상시적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어느 한 두명의 교사, 한두 부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교사(상담교사, 보건교사, 담임교사, 기타 관심있는 교사).학생.학부모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나아가 지역사회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자원들과 적절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일이다. (예를 들어 학급의 학생들의 일상적인 관찰과 상담은 교과교사 및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기타 특수한 상황에는 전문상담교사 및 보건교사가, 집단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높이고자 할 때는 담임, 상담·보건 기타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가가 힘을 모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3) 보건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정책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보건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 부여

학교폭력대책법에서 각 학교에 전문상담교사²⁶⁾를 배치하기로 한 바, 여러 측면에서 보건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교사는 별도의 전문상담교사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이미 양성과정에서 상당 수준의 학점이수와 실습으로 훈련을 거친 데다, 학교현장에서 쌓인 실전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대학원에 개설된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의 이수학점을 살펴보면 8과목 이상 20학점인데, 이중 특수상담교사 자격과정의 영재아 상담과 중등상담교사자격과정의 진로상담 이외에는 보건교사양성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며 학점도 그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양성과정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한데다 학교현장에 처한 조건 역시 상담상황에 자주 직면할 수 밖에 없었던 보건교사들에 대하여 교육당국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오랫동안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 대학원에서 상담전문교사자격과정을 이수한 보건교사조차 그 자격

26) 전문상담교사는 종전의 교도교사와 같은 자격으로 초등, 중등, 특수학교 2급정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상담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양성과정은 교육대학원에 1년제 비학위과정의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과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과정에서의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이 있음.

을 부여하지 않다가, 겨우 2001년 7월에 이르러서야 보건교사들의 강력한 촉구에 27) 못이겨 법안을 개정하고 2002년 8월부

상담전문교사	초등	중등	특수
공통필수 6과목이상 14학점이상	심리검사, 성격심리, 특수아 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선택 2과목 이상 4학점 이상	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리, 청년발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이상심리, 영재아상담, 이상심리, 학습부진아, 행동수정	
비고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을 이수하지 아니하나 2종이상의 사례 연구 발표 및 20시간이상의 실습, 각과목 2학점		
보건교사 관련학점 ²⁸⁾	아동간호와 실습(아동발달과 심리, 행동수정, 이상심리)6학점, 건강교육과 상담 3학점, 가족발달과 간호(가족상담)1.5-3학점, 인간관계와 의사소통론 3학점, 노년간호학2학점, 정신과 간호(심리검사, 성격심리, 이상심리, 행동수정, 위기간호, 상담이론과 실제)와 실습(상담실습 및 사례연구)5-6학점, 청소년간호학3학점, 지역사회정신간호학 및 실습 3학점		

터 비로소 그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나마 시행령에서 소급적용에 관한 조항을 만들지 않아 이전에 그 과정을 이수했던 수많은 보건교사들이 모두 전문상담교사에서 배제고 말았다.²⁹⁾ 상식이 통하는 교육부라면 다시는 전문 인력을 이처럼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당사자에게는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탁상행정을 즉시 시정하고 노무현정부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바와 같이 전문상담교사 과정을 이수한 보건교사는 물론, 그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보건교사도 “정신보건전문과정”을 통하여 약간의 추가 연수를 거쳐 전문상담교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보건교사의 생활지도 장학·연구직 참여

최근들어 보건교사가 보건분야의 장학연구직에 진출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일반장학연구직에는 아예 기용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학교폭력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가졌다면, 학교폭력 대책에 마인드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보건교사를 일반 생활지도와 상담 분야의 장학연구직에 포함시켜야 마땅하다. 모든 교사가 다 포함되는 교육정책의 기획 및 시행에 보건교사만 소외되도록 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비효율적인 탁상행정이며 형평에 어긋나는 잘못된 관행이다.

27) 본인이 전교조 보건위원장으로 있었던 지난 2000년-2001년, 이를 설득하기 위해 교육부에 문건을 제출하고 교원양성연수과, 국회교육위 등에 이를 촉구하였던 바, 2001년 7월 마침내 법안이 통과되었다.

28)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은 비슷하다.

29) 관련 교육청 공문-평체81480-1050(2002.8.28)- 명칭변경 및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에 대한 공문

4. 보건교사의 역할찾기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활성화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그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각 학교에 상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담전문교사가 배치되게 된 것도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그 뜻자리가 광범위하고 그 성격이 특수하여 근절이 쉽지 않은 문제다. 현재 교과교사도 부족한 마당에 단기간에 각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나 설령 배치가 된다 하더라도 상담교사 혼자 수백, 수천명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모두 감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학교폭력은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여러 요인이 겹쳐 잘 드러나지 않은 채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보건교사는 앞으로 전문상담교사의 길을 통하여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길도 있겠지만, 보건교사로서 아이들과 보다 독특한 형태로 교감이 가능한 보건실의 특수성을 잘 살려서 앞으로 담임 및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 앞으로 시행령에서 모든 교사에게 상담권이 부여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³⁰⁾ 구성 시에 보건교사, 상담교사, 담임교사, 지역사회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면 상담의 지속성과 종합성이 가능한 기본 틀은 만들어 지는 셈이다. 더 이상 폭력의 피해 가해 당사자들과 수없이 많은 상담을 하면서 학생들과 깊은 친밀감을 형성해 왔음에도³¹⁾, 구조적으로 학교가 이를 부정하며 신체적 치료 이상 개입할 여지를 막아왔던 우를 더 지속하지 못하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꿀 일이다. 보건교사 1인체제에 안주하여 업무가 과하다는 이유로 중요한 교육활동을 포기하려 하기보다는, 그러한 학교현장의 요구가 높음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규모학교의 2인 이상 체제를 모색할 일이다. 노무현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보건교사 확대배치, 보건교과 설치, 학교보건지원센터 설립, 그리고 정신 보건전문연수 후 전문상담교사자격부여 등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뜨거운 운동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119결의대회는 한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며, 널리 학생, 학부모, 시민 사회단체 등과 함께 하면서 뜨거운 “운동”으로 되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학교폭력에 대처해 왔던 그간의 경험을 정리해 내면서 보다 폭넓은 연구와 실천을 함께 모색할 “학교폭력연구팀”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본 연구회와 “학교폭력연구팀”的 모색>

- ▶ 우리는 학교폭력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인 인권과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을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 노력한다.
- ▶ 또한 이러한 노력을 보다 체계화하고 연구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할 방법을 모색한다.
- ▶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등과 의사소통하고 연대하여 가능한 지원체계를 극대화하고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4) 학교에서 소위 문제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보건실이라는 학교현장의 기본적인 상식은 바로 이러한 상담이 늘 보건실에서 이루어져 왔고 학생들이 그만큼 보건교사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장 할 수 있는 일들>

- 건강조사서에 학교폭력의 피해, 가해 여부를 조사하는 난을 만들고, 비밀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 보건실에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낙서장을 만들어, 누구든지 어려운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배려한다.
- 보건실 방문학생을 대할 때 학생들의 ‘증상진술’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교우관계와 태도, 정서반응을 유심히 살피도록 한다. 특히 며칠 사이에 ‘두통’이나 ‘복통’ 등 흔한 증상을 내세워 반복적으로 보건실을 찾아와서 쉬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편안하게 대화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여 상담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또 얼굴이나 귀, 손발 등에 멍이 들거나 부은 방문 학생에 대해서는 다치게 된 경위를 충분히 물어보아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범상치 않은 징후(불안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눈물을 글썽거리거나 “장난하다 다쳤다”고 자꾸 별일이 아님을 강조하거나)가 있다면 학교 폭력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섬세하게 대해야 한다. 추후에라도 담임이나 학급아이들을 통하여 반드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상담실, 담임교사, 보건도우미 등을 통하여, 피해·가해 가능성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식적으로 잘 관찰하여 예방에 힘쓴다.
- 보건교육시간에 의사소통, 의사결정, 스트레스 관리, 분노상황 대처법, 학교폭력의 피해와 아픔,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시간을 배정한다. 필요시 담임교사, 상담교사와 집단상담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시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실, 보건실 계시물을 활용한다.
- 학교폭력임이 확인되면 일단 학생을 안정시키고 더 이상의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학생들이 두려움을 심하게 나타낼 때는 교실에 보내지 말고 안정시킨 후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간단하게라도 진술서를 쓰도록 한다. 상처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더라도 담임교사와 부모에게 알리고, 병원 진료를 통하여 부상의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의 평택 모 여중에서 있었던 보건교사의 자살사건에서도 보여지듯이, 이후에 문제가 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는데다 혹 이후 다른 일로 부상을 입게 되었을 때 조차 이때의 부상으로 삼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충분히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피해 부모와 직면해야 할 때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언급하도록 한다. 어느쪽에 편파적으로 행동하지 않는지 예민하게 지켜보는 학부모에게 자칫 쓸데없는 오해와 바람직하지 못한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가능한 한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상담실, 담임교사 등과 함께 팀으로 함께 해결할 방안을 찾는다.

2) 학교의 건강요구에 따른 보건교사의 역할 전환 요구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건강을 육체적인 영역으로, 또 그 척도를 건강/불건강으로 바라보는 고정관념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역시 매우 협소하게 고정되어 있다. ‘학교에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아픈 환자가 생겼을 때 이에 대처하는 일’로 이미지화되어 있고, 이에 더하여 최소한의 건강 이상에 대한 스크린과 검진업무, 간헐

적 비정규보건교육, 행정적 환경위생을 권장하는 것이 고작인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학교 청소년들에게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스트레스, 비만 등 성인병, 학교폭력, 약물오남용(흡연과 음주 포함), 왕따, 성폭력 등의 건강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태³²⁾에 있음에 비추어, 더 이상 이같이 협소한 역할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실제 학교에서 이같은 건강문제를 접할 기회가 많은 보건교사가 그 전문적 판단에 따라 중재를 시도하려고 해도, “건강만 신경 쓰면 되지, 왜 다른 일에 관심이 많은가?”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거나, 심지어 이를 월권으로 치부하여 아예 원천적으로 접근을 막으려 드는 한심한 상황까지 적지 않다. 학교 내 모든 인력, 심지어 학교 밖에서의 접근 가능한 인력을 적극 참여시켜도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내 유일한 의료인이자 교사로서 1차의료를 담당 할 전문 인력을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로 가두어 두고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을 침해하고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학교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시급한 건강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따라서 신속하게 그 전환을 모색해야 할 일이다.

3) 교육·보건 당국은 상식이 통하는 정책입안으로 약속이행을!

그나마 육체적인 건강문제도 예방이나 교육 등 적극적인 역할은 간과하고 ‘사후처리’ 위주로 일관하여 온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다. 이는 일차적으로 보건교사들이 “제 역할찾기”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반성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건강의 개념에 대한 후진적인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회인식, 그리고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보건교육과 공공의료등 제도적인 토대 없이 병원중심 상품의료의 대상으로 국민을 방치해 온 보건복지부의 후진적인 보건의료정책에 그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³³⁾ 또한 주지과목 중심의 입시교육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삶의 기본이 되는 보건교육에 대한 학교현장의 절박한 요구를³⁴⁾ 기만적 ‘범교과’ 논리로 교묘하게 무시하고, 보건교사의 역할을 축소·왜곡시켜 온 교육당국의³⁵⁾ 상충 관료들(특히 특수교육보건과의 보건담당 관료들)의 반 현장적 교육정책에 기인 한다. 앞으로 교육·보건 당국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상식이 통하는 정책입안을 하도록, 그래서 지난 2002년, 노무현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약속하였던³⁶⁾ 보건교과 설치, 보건교사 확대 배치, 학교보건지원센터 확립을 촉구하고, 정규보건교육과 다양한 건강관리활동이 가능하도록

32)

33) 2001년, 전교조 보건위(위원장 우옥영)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학교보건의 발전 방향과 보건교사의 역할” 토론회 발제문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34) 보건교사들은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2. 11.9 “보건교육정상화 결의대회”에 1천2백명이 모여서 보건교과 설치, 보건교사 확대 배치, 학교보건지원센터 등을 노무현 정부 대선공약으로 반영하였던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이 공약은 교육부에서 거의 추진되지 않았으며, 교육부가 학교보건위원회에 제출하였던 것은 수조원을 들인 급식개선방안으로 학교보건지원센터(대선공약이었던)대신 급식지원센터가 제출되었을 뿐이다.

35) 지난 2001년 국회 교육상임위에 “보건교사로 하여금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학교보건법 및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여 부결되었다. 후에 특수교육보건과 김상숙 서기관, 그리고 교육과정정책과 최성식 장학사(체육)를 방문하여 이에 항의하자, 범교과로 하자는 것이라는 기만적인 논리를 표명하였다.

36) 보건교사관련 2002 민주당 대통령 선거공약안

록 여론을 만들고 힘을 모아야 할 일이다. 일단 여기서는 보건교사와 학교폭력으로 내용을 한정하여 현황과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학교폭력과 보건교사

1) 학교폭력과 청소년

청소년기는 또래문화로 특징지워지는 시기다. 이 또래들의 강력한 결집력은 또래끼리 모여서 서로 부딪치며 사회적인 경험을 통하여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돋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들이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절하기 힘든 상황에 부딪쳐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매우 크다.³⁷⁾ 특히 서로 수용할 수 없는 차이를 느끼게 되거나 조정이 불가능한 갈등이 발생할 때, 가정과 사회에서 배워온 대처기전이 적절하지 못하면 아주 심각하게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가정과 학교의 수직적인 문화 토양이 다양성 보다는 획일성에,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폭력적으로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억압하는 경향이 강한데다, 이를 극적으로 확대하여 상품화한 폭력적인 매체들이 홍수처럼 아이들을 휩쓸어 모방심리를 자극하고 있어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 더구나 청소년의 삶의 질이 적성을 무시한 입시공부와 성적이 부당하게 자신의 존재를 서열화하는 잣대가 되고, 최소한의 잠자권리, 먹을 권리, 휴식의 권리조차 정당하게 누리지 못한채³⁸⁾ 하고 싶은 일은 커녕 일상의

*. 23. (학교보건교육의 강화와 학교급식의 내실화) 학교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학교급식을 내실화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학생들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예방적 건강교육을 위해 보건교과를 설치하고, 보건교사를 확대 배치하여 학교보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보건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의료 및 학교보건의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보건 부분에 기재된 보건교사와 관련된 공약입니다.

- 6,000여 명의 학교 보건교사에게 정신보건전문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전문 상담교사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 청소년 흡연, 학교폭력, 성 문제, 입시 스트레스 등에 대응하겠습니다.

- 초·중·고등학교에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학교보건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37) 신일용, “청소년폭력에 대한 정신과적 진단”, 청소년은 아직 행동을 통제하는 사고력이 충분히 따라오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상 청소년에서도 가끔 의도하지 않은 폭력으로 나타나는 예들도 있다.

38) 2001.9. 전교조 보건위원회 실태조사 중에서 발췌

- 고교생의 평균 수면 시간- 6시간 7분, 고3은 5시간 27분(아침에 스스로 잠에서 깨지 못하는 고교생 68.5%)

- 아침식사를 전혀 안하는 학생이 25.1%

-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성적(입시) 74.8%, 진로(8.8%), 돈 (5.0%), 이성(3.8%), 외모(2.1%), 가족(1.7%), 친구 (1.6%) 등

- 시험기간 스트레스 - 심하다. 51.3%

- 스트레스 해소방식- 잔다 32.8%, 그냥 참는다(18.2%),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낸다(14.4%), 음식을 먹는다 (13.0%), 술, 담배(9.8%) 등

- 시험기간 불안·짜증 61.2%, 소화불량 37.8%, 두통 35.4%, 복통(설사) 16.3%, 불면증 10.6%, 변비 8.3%, 입병 8.3%, 열 8.2%, 생리 불순 4.3% 등

스트레스조차 제대로 해소할 길이 없는 상태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아이들이 억압되었던 분노를 약한 출구를 통해 폭력적으로 폭발해 버리게 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일일지 모른다. 여기에 정보화 사회와 사이버문화로 즉석 해결에 익숙해진 '인스턴트 문화', 그리고 수입을 확대할 청소년의 일자리나 노동권 하나 변변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품 구매 충동을 과다 자극하는 소비문화도 함께 얹혀 학교폭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2)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의 현주소

학교폭력이 발생할 뜻자리는 이처럼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에 대한 대처수준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이다. 일단 심각한 형태로 외부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파악조차 제대로 하기 어렵거나와 설령 수상한 전兆증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에 적절한 대처를 할 만큼 학교는 대개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① 폭력에 대한 왜곡된 태도와 성역할

여기에는 "아이들이 다 싸우면서 크는 거지"하는 폭력에 대한 지나친 관용성과 "사내 자식이 그까짓 일로..."하면서 피해자의 두려움을 과소평가하거나 심지어 비난하기까지 하는 남성성역할에 대한 왜곡된 입장도 한 몫을 한다. 특히 후자는 아이들에게 널리 내면화 되어, 자발적으로 상담을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일렀다", "남자답지 못하다"고 치부되기 일쑤이며, 바로 그 이유만으로도 왕따가 되거나 더 심한 폭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숨기게 되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만들며 상황을 악화시키게 하는 한 요소다.

② 과도한 수업시수와 상담이 어려운 환경

교사들의 과도한 수업시수와 바쁜 잡무 역시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하는 한 요소다. 상담은 학생의 마음이 내키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과도한 수업으로 시간을 맞추기도 쉽지 않고, 또 시간이 있다 해도 대개 다수에게 열린 공간에서 늘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교사에게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의 아이들이 상담을 신청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일이다.

③ 수직구조와 맞물린 담임중심 생활지도론과 기계적 업무분장론

교육부-교육청-학교장-교감-부장-교사-학생으로 이어지는 하향적 수직구조에서의 하향식 의사소통 또한 교사들간, 부서간, 그리고 교사-학생간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여 문제를 악화시키기 쉬운 주요요인이다. 여기에 통념적인 담임중심 생활지도론이 맞물리면, 담임 이외의 교사들은 아무리 학생들이 원해도 문제에 개입할 권한과 책임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기 일쑤다. 학생들은 싫든 좋든 우선적으로 담임을 찾아가 상담을 해야 하는 것이며, 대개 비담임은 이런 관행 앞에 교사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의무와 권리를 무장해제 당하기 마련이다. 또 기계적인 업무분장론도 문제인데, 앞에서 언급한 맹목적 담임주의를 비롯하여, 상담은 상담실에서 하는 것이니 다른교사(특히 보건교사)가 하면 안된다는 월권론, 개인적인 상담이 아닌 사안(특히 폭력이나 비행그룹 관련 사건)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알게 되면 생활지도부로 넘겨야 한다는 형사론이 그것이다.

① ① 요는 학교폭력 문제를 대처함에 있어 학교가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욕구와 정서, 현실적인 조건을 존중하지 않으며, 공감과 라포(rapport)형성이라는 상담의 기본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불합리한 관행에 따라 수직적이고 행정편의주적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3) 보건교사가 학교폭력에 민감하게 되는 지형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교사는 그 누구보다 학교폭력에 민감하게 되는 지형에 놓여 있다.

①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학교안에 상담실이 있다고는 하지만, 상담을 전담하는 교사가 상주하는 것도 아니거나와, 행여 유능한 상담원이 상주한다 해도 혹 피해자가 상담을 한 사실이 가해자들에게 알려지면 심각한 보복이 발생하곤 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대개 상담실을 방문하기보다는 보건실을 찾는다. 폭력이 발생하면 보통 신체적 상해를 입게 마련이고, 피가 나거나 명들고 붓는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상담이 아닌) 이에 대한 치료를 받으려 보건실에 가는 것은 가해자로서도 보복의 명분이 서지 않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 당장 직접적 폭행이 가해지지 않았다 해도, 잠재적으로 그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학교폭력이나 왕따의 초기, 혹은 사후 후유증-도 힘든 상황에 닥칠 때, 복통이나 두통 등 간단한 '신체적 증상'을 빌미로 언제든지 쉬러 올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② 특수한 만남과 상담

곧 보건실에서 보건교사와 학생의 만남은 응급처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하게 알려져 있는 통념과는 달리 복잡한 숨은 역할을 요구받는다. 일단 학생들을 관찰하여 빠른 판단을 해야 하는데, "장난하다가 그랬다"는 학생들의 혼한 진술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단순사고인지 학교폭력이나 왕따와 관련된 문제인지, 학생들의 상태가 심각한 분노나 살기가 있는지 아닌지(심각한 경우 곧 보복이 있게 됨), 가해자를 분리만 시킬 것인지 담임과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받아야 할지, 병원을 보내야 할 것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들이 그것이다. 때로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도 단순사고가 아닌 경우 감정이 얹히게 되기 때문에 추후 심각한 형태로 증폭될 수 있으며 자칫 법적 소송 등 험악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상처나 증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신뢰감을 형성하는 일이다. 학교폭력이나 왕따를 당한 학생들은 극한 두려움이나 위축으로 침묵하거나, 일렀다는 소문이 두려워 '폭력(혹은 왕따)이 아니라 장난' 등으로 둘러대기 마련인데, 정성스러운 돌봄과 치료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비교적 자연스레 안도감과 신뢰감을 이끌어 낼 수 있어 마음을 열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말을 못하고 끙끙거리던 상황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정황과 심리상태를 드러낼 수 있어야 일단 더 심각한 상황으로의 악화를 막고 대책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하여 학생과 친밀감이 형성되면 이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주변관계의 안정과 학생자신의 적절한 대처능력의 개발-세세한 상담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해 지게 된다.

③ 보건교사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갈등

그러나 이 과정은 보건교사가 학교폭력을 둘러싼 학생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의식적인 관

-스트레스 해결 방법은 그냥 참는다 62.3%, 좋아하는 일(25.8%), 약국에서 약을 사 먹는다(9.2%), 병원

치료(2.8%)

-요통 여부 82.9%(늘:28.8%+몇개월째:15.2%+오래공부하는날만:38.9%)

-눈의 피로 통증을 느낀다는 응답이 89.6%(자주:38.0%+가끔:51.7%)

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쉽지 않은 일이다. 보건실에 기타의 건강문제로 찾아오는 학생들의 수도 만만치 않고(특히 대도시의 거대학급), 보건교육, 신체검사 등 건강평가와 검진, 기타 공문처리 등의 잡무에 이르기까지 할 일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도 상담을 한다는 것은 학생에 대한 애정과 교사로서의 사명감에 충실히려는 버거운 노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려 하는 교사일수록 수직구조화의 지침과 맹목적인 담임중심생활지도론, 기계적 업무분장론에 부딪쳐 상처받기 쉽다. “왜 상담실이 있는데 보건교사가 상담을 하느냐”, “왜 담임이 할 일에 보건교사가 주제넘게 나서느냐”는 우문을 넘어선 눈총과 질타 앞에 한 학교에 혼자뿐인 보건교사들은 외로이 벌거벗겨지는 것이다. 보건교사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은 함께 하기 위한 모색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학생들과 보건교사 사이에 특수하게 형성된 신뢰감이 그대로 상담교사나 담임교사에게 이전되기가 쉽지 않고, 또 학생들이 “절대 다른 선생님들께 말하지 말아 달라”고 우기는 경우도 많아서, 그 모색조차 실은 상당히 신중하고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법이다. 다행히 이를 이해하는 교사라면 합리적으로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더 지배적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실 양성과정에서 보건교사만큼 상담능력을 훈련받은 교사들도 혼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회와 학교는 이를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고 보면 보건교사는 전문적인 판단과 학교의 관행사이에서 심각하게 갈등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칫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편의적으로 학생들을 상담실·담임교사에게 급하게 인계하다가 학생들을 상처입히고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처음에 상담활동에 의욕을 보이던 보건교사라 해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모르는 채 하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편하다는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구조와 관행은 소신있는 교사일수록 고통스럽게 흔들어 대고, 그도 모자라 소중한 사기를 뿌리 채 뽑아버리는 한편 교육을 왜곡시키는 적당주의와 보신주의를 든든하게 키우는 양분이 되는 것이다.

② ②

④ 초동대처와 법적 소송 등의 문제

최근 경기도의 한 보건교사의 죽음을 통해 문제가 되었듯이, 보건교사들의 일상은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과는 달리 살얼음을 딛듯 아주 조심스러운 상황에 종종 처하게 된다. 단순한 육체적 이상이나 사고일 경우에도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응급처치의 적절성, 신속한 이송여부, 책임성이나 보상 문제 등으로 그럴 수 있거니와, 무엇보다 학교폭력(교사폭력, 학생간 폭력 모두)이나 왕따와 관련된 경우에는 특히 감정적으로 예민해 지기 때문에 더욱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학교폭력 피해 여부의 정확한 판단,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피해학생의 안정과 적절한 치료, 간결하고도 정확한 기록, 담임교사 및 부모와의 신속한 연락, 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빠른 이송 등 초동대처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이후의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부모일수록 감정이 절제되지 않은 채 과잉반응을 보이고, 가해자의 부모일수록 “아이들이 그럴수도 있지”하는 지나친 관용성과 여유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에 비추어, 보건교사는 아주 객관적인 사실 이외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학교와 교사-학부모와 학생사이에 불신이 많을수록 보건교사가 받아야 하는 하중은 몇 배로 증폭될 수 있다. 투명한 학교운영이 되지 않는 불똥은 이렇게 약한 보건교사에게로 튀기 쉽다.

사례1) 서울의 k 모 중학교 보건실에는 소위 문제아라고 지칭되는 아이들이 비교적 많이 찾아온다. 보건교사는 그 아이들의 특별한 이유없는 방문으로 다소 업무의 지장도 있고 귀

찮을 때도 있지만, 워낙 엉뚱한 곳으로 위험스레 잘 뛰는 아이들이라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 문제를 악화시킬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특히 담임교사와 관계가 좋지 않은 몇몇 아이들은 이렇게라도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몇몇 아이들이 한꺼번에 학교를 나오지 않아 수소문해 본 결과 이성문제가 얹혀 한 아이를 집단으로 폭행을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폭행을 당한 아이쪽에서 억울하다며 선배들을 동원하여 때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어 무서워서 학교를 나오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날 학교를 나오지 않던 아이들이 갑자기 보건실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를 발견한 주변교사들이 이를 마치 월권으로 치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진술서를 받고 상담을 했던 교사는 여럿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아이들이 보건교사를 찾아왔고, 그 장소가 보건실이었다는 이유였다. 당일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담임교사, 생활지도부장 등과 연락을 취해 보았지만, 마침 당일 그 두분이 다 출장중이었다. 아이들을 잘 달래서 학교를 나오라고 하고 돌려보낸 다음날 다시 아이들이 바로 교실로 가지 않고 보건실을 찾아왔다. 아이들에게 일단 (학교의 관행대로) 담임교사에게 가라고 설득을 하여 간신히 한 아이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워낙 담임을 무서워하는 한 아이는 끝까지 가지 않고 버티니 참으로 곤란했다. 하여 담임교사를 찾아가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지만 무려 3번을 찾아가도 담임은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한마디로 냉담하게 대했고, 승진을 꿈꾸며 교장, 교감의 의사를 잘 파악하던 그 담임교사를 총애하던 교감선생님은 담임을 노골적으로 편들고 나서며 “아니, 보건교사가 아이들을 내쫓아야지, 왜 거기에 놔 둬?” 하면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기까지 했다. 우여곡절 끝에 아이들은 그 후 학교에 나오게 되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었던 보건교사가 교감선생님을 찾아가 “어떻게 교사가 자기를 찾아온 아이들을 내 쫓아야 한다고 하십니까?” 하고 항의했더니, “아니 자기가 상담교사도 아닌데 왜 나서? 자기 할일이나 잘 하면 될 일이지”라는 대답을 하였다. “모든 교사가 여건이 안되어서 상담을 못하는 게 문제이지, 격려는 못할망정 어떻게 교사로서 양심을 저버리라고 하는가?” “상담 업무분장은 더 잘하자고 있는 것이지, 나머지 교사들이 상담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고 항의를 했지만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았다. 이후 그 보건교사는 아이들이 무엇을 상담해 와도 교감이 하던 말과 주변교사들의 눈총이 떠올라, 아이들을 위해서 상담을 해야 할지, 그냥 말없이 편안하게 모른척하고 지내야 할지 항상 갈등을 하게 되었다.

③ ③ 사례2) 서울의 s모 중학교 보건실에 1학년 학생들 몇 명이 몰려와. 장난을 하다가 부딪쳤는데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왔다고 했다. 어떻게 다쳤는지 물어보았더니 학생들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았고 따라온 아이들이 자꾸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미심쩍어, 상처치료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다친 아이만 남기고 나머지 아이들을 모두 보냈다. 드레싱을 하고 얼음찜질을 하면서 다친 아이에게 아프냐고 했더니 아이가 “아프다”고 하여 병원으로 가 보자고 했더니 “안아프다”고 했고, 다시 어떻게 하다가 다쳤는지 묻자 “장난하다가 그랬다”고 하다가 종내는 “다 내 잘못 때문”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오랜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인하게 된 것은 아이가 초등학교 5,6학년 때 전학온 이후 심각한 집단따돌림에 시달리며 간헐적으로 폭력을 당해 왔고, 오늘도 아이들이 놀리다가 밀어서 부딪쳤는데 아이는 그 이유를 다 자신의 잘못 때문으로 몰아 부치며,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 치해 있다는 점이었다. 병원으로의 이송을 위해 학교에 오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초등 저학년일 때 아이가 가위를 친구에게 던진 사건이 있어서, 그 다

음부터는 다른 아이들과 싸우면 무조건 못하게 하고 혼을 냈으며 네 잘못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다고 하셨다. 이에 가급적 아이를 비난하지 말고 힘들어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것을 권유하였고, 한편 아이의 상태가 가능하다면 상담실이나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후 교감선생님은 상담실에서 교육청에 바로 연락하도록 하여 아이가 그 상담실을 다니도록 하라고 했고(아이의 상태와 조건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할 일을 찾기 보다는 다소 기계적으로 상담가와 연결시키면 된다고 봄), 담임교사에게 상황을 이야기 했으나 다소 불쾌한 뉘앙스로 “일단은 내가 알아서 해 보겠다”고 하면서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상담실에서는 원래 예정된 1학년 집단상담을 그 아이가 속한 반을 먼저 하는 노력을 보이기는 했으나 담임이 해 보겠다고 했으니 더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교사의 전문적 판단은 분명히 그 아이에게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주변의 지지가 섬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학교내의 역학관계는 누구의 탓인지 그 아이에 대한 더 이상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3. 학교폭력의 극복을 위한 제언

1) 학생의 상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상담에 전념할 전문상담교사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일단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업무분장은 상담을 더 잘하기 위하여 교사들의 고유한 상담활동을 지원하는 가운데 전문화를 시도하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모든 상담을 상담실과 상담교사 1-2인에게 한정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위에서 지적했던 바, 담임제도 역시 그렇다. 더구나 상담은 그 본질 상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 내담자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1천-2,3천명에 달하는 도시의 거대학교일수록 학생들의 상담을 상담실에서 다 감당할 수 없는데다, 담임교사 역시 주당 20-30시간 가까운 수업과 기타 자질구레한 일들에 떠밀리다 보면 학교폭력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특수한 문제들을 혼자 다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 보건교사 역시 상병자 관리와 응급처치, 기타 잡무 등에 시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보건실에서의 내담자와의 만남이 신체접촉이나 치료를 통한 신뢰감·친밀감 형성이 용이하고, 기타 안정된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으로 확보되는 등, 상담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내담자의 마음을 움직이기 좋은 공간이다. 요는 더 이상 어른들의 편의에 따라 기계적으로 아이들을 나누려 들지 말고, 학생들의 요구가 있고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 학생의 상담 선택권을 보장할 것과 모든 교사에게 (현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너무도 당연한)상담의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³⁹⁾

2) 대내외적으로 체계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

학교폭력의 못자리가 광범위하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역시 전방위적이어야 한다.

39) 사실 현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사의 전문성, 교육기본법과 보건복지부가 보장하는 보건교사의 전문성에 비추어 상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을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지나가던 소도 웃을 기막힌 일이지만, 그러나 관료행정과 기계적 업무 분장론이 교권을 침해하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를 시행령에 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무엇보다 폭력을 미화하거나 방관하지 않는 사회분위기가 중요하며, 힘을 앞세운 폭력적·권위적 해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사회 제 분야의 수평적인 구조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한편 방송이나 언론들이 폭력을 이용하여 매체의 인기율을 높이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모니터를 통한 폭력지수 측정과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공간을 확대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호기심의 충족, 건전한 만남이 가능하도록 하고,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적극 마련하여 건전한 소비문화가 가능한 토양을 일구어 내야 할 것이다. 또 청소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의 경우, 청소년이나 주위에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하며,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기타 청소년 폭력이 발생했을 때 쉽게 연락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공동학칙제정을 시도해야 한다.

특히 학교의 변화가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인데, 큰 틀에서 입시교육의 인간화교육으로의 전환과 수직적인 교육구조의 수평적 개혁이 우선적 과제이며, 특히 학생회 법제화를 통한 학생들의 발언권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는 상부의 지침과 감사에 촉각이 서 있어 학생들이 보내는 신호에 둔감해져가는 교사들을 학생들의 요구에 민감해 지도록 바꾸는 중요한 개혁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상시적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어느 한 두명의 교사, 한두 부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교사(상담교사, 보건교사, 담임교사, 기타 관심있는 교사)-학생-학부모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나아가 지역사회 자원들과 적절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급의 학생들의 일상적인 관찰과 상담은 교과교사 및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기타 특수한 상황에는 전문상담교사 및 보건교사가, 집단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높이고자 할 때는 담임, 상담·보건 기타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가가 힘을 모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3) 보건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정책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보건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 부여

학교폭력대책법에서 각 학교에 전문상담교사⁴⁰⁾를 배치하기로 한 바, 여러 측면에서 보건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교사는 별도의 전문상담교사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이미 양성과정에서 상당 수준의 학점이수와 실습으로 훈련을 거친 데다, 학교현장에서 쌓인 실전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대학원에 개설된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의 이수학점을 살펴보면 8과목 이상 20학점인데, 이중 특수상담교사 자격과정의 영재아 상담과 중등상담교사자격과정의 진로상담 이외에는 보건교사양성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적절한 양성과정을 거친데다 학교현장에 처한 조건 역시 상담상황에 자주 직면할 수 밖에 없었던 보건교사들에 대하여 교육당국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오랫동안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 대학원에서 상담

40) 전문상담교사는 종전의 교도교사와 같은 자격으로 초등, 중등, 특수학교 2급정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상담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양성과정은 교육대학원에 1년제 비학위과정의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과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과정에서의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이 있음.

전문교사자격과정을 이수한 보건교사조차 그 자격을 부여하지 않다가, 겨우 2001년 7월에 이르러서야 보건

상담전문교사	초등	중등	특수
◇ 공통필수 6과목이상 14학점이상	심리검사, 성격심리, 특수아 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 선택 2과목 이상 4학점 이상	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이상심리, 청년발달, 행동수정	영재아상담, 이상심리, 학습부진아, 행동수정	
비고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을 이수하지 아니하나 2종이상의 사례 연구 발표 및 20시간이상의 실습, 각과목 2학점		
◇ 보건교사 관련학점41)	아동간호와 실습(아동발달과 심리, 행동수정, 이상심리)6학점, 건강교육과 상담 3학점, 가족발달과 간호(가족상담)1.5-3학점, 인간관계와 의사소통론 3학점, 노년간호학2학점, 정신과 간호(심리검사, 성격심리, 행동수정, 상담이론과 실제)와 실습(상담실습 및 사례연구)5-6학점, 청소년간호학3학점, 지역사회정신간호학 및 실습 3학점		

교사들의 강력한 촉구에 못이겨 42) 법안을 개정하고 2002년 8월부터 비로소 그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소급적용에 관한 조항을 만들지 않아 이전에 그 과정을 이수했던 수많은 보건교사들이 모두 전문상담교사에서 배제되었다. 43) 상식이 통하는 교육부라면 다시는 전문인력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당사자에게는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이런 탁상행정을 중단하고 앞으로 전문상담교사 과정을 이수한 보건교사는 물론, 그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보건교사도 약간의 추가 연수를 거쳐 전문상담교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보건교사의 생활지도·연구적 참여

최근들어 보건교사가 보건분야의 장학연구직에 진출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일반장학연구 직에는 아예 기용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학교폭력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가졌다면, 학교폭력 대책에 마인드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보건교사를 일반 생활지도와 상담 분야의 장학연구직에 포함시켜야 마땅하다. 모든 교사가 다 포함되는 교육정책의 기획 및 시행에 보건교사만 소외되도록 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비효율적인 탁상행정이며 형평에 어긋나는 잘못된 관행이다.

41)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은 비슷하다.

42) 본인이 전교조 보건위원장으로 있었던 지난 2000년-2001년, 이를 설득하기 위해 교육부에 문건을 제출하고 교원양성연수과, 국회교육위 등에 이를 촉구하였던 바, 2001년 7월 마침내 법안이 통과되었다.

43) 관련 교육청 공문-평체81480-1050(2002.8.28)- 명칭변경 및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에 대한 공문

4. 보건교사의 역할찾기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활성화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그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각 학교에 일체의 수업을 하지 않고 상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담전문교사가 배치된다면 학교폭력 문제는 앞으로 그 근절을 향한 상당한 진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교과교사도 부족한 마당에 단기간에 각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나 설령 배치가 된다 하더라도 상담교사 혼자 수백, 수천명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모두 감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학교 폭력은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여러 요인이 겹쳐 잘 드러나지 않은 채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아이들과 보다 독특한 형태로 교감이 가능한 보건실의 특수성을 잘 살려서 앞으로 담임 및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행령에서 모든 교사에게 상담권이 부여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 44) 구성 시에 보건교사, 상담교사, 담임교사, 지역사회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상담의 지속성과 종합성이 가능한 기본 틀은 만들어 지는 셈이다. 더이상 폭력의 피해가해 당사자들과 수없이 많은 상담을 하면서 학생들과 깊은 친밀감을 형성해 왔음에도 45), 구조적으로 학교가 이를 부정하며 신체적 치료 이상 개입할 여지를 막아왔던 우를 더 지속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간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앞에 쉽게 무릎을 꿇고 포기하지 말고,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변화를 추동해 가야 할 것이다.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은 그만큼 보건교사에 대한 학교의 요구가 높은 것이니만치 현재와 같은 보건교사 1인 체제에 안주하지 말고, 노무현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보건교사 확대 배치, 보건교과 설치, 학교보건지원센터 설립을 현 정부 임기 내에 지켜내도록 촉구하면서 변화의 상-2인체제-을 만들어 보자. 119결의대회는 한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있으며, 필요한 시점에서 다시 불꽃으로 타오를 것이다.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한편에서 학교폭력에 대처해 왔던 그간의 경험을 정리해 내면서 보다 폭넓은 연구와 실천을 함께 하는 “학교폭력연구팀”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보건교사의 활동 모색>

-건강조사서에 학교폭력의 피해, 가해 여부를 조사하는 난을 만들고, 비밀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보건실에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낙서장을 만들어, 누구든지 어려운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배려한다.

-보건실을 방문학생을 대할 때 학생들의 ‘증상진술’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교우관계와 태도, 정서반응을 유심히 살피도록 한다. 특히 며칠 사이에 ‘두통’이나 ‘복통’ 등 흔한 증상을

14) 학교에서 소위 문제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보건실이라는 학교현장의 기본적인 상식은 바로 이러한 상담이 늘 보건실에서 이루어져 왔고 학생들이 그만큼 보건교사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세워 반복적으로 보건실을 찾아와서 쉬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여 상담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얼굴이나 귀, 손발 등에 멍이 들거나 부은 방문 학생에 대해서는 다치게 된 경위를 충분히 물어보아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범상치 않은 징후(불안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눈물을 글썽거리거나 “장난하다 다쳤다”고 자꾸 별일이 아님을 강조하거나)가 있다면 학교 폭력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섬세하게 대해야 한다. 추후에라도 담임이나 학급아 이들을 통하여 반드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상담실, 담임교사, 보건도우미 등을 통하여, 피해·가해 가능성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식적으로 잘 관찰하여 예방에 힘쓴다.

-보건교육시간에 의사소통, 의사결정, 스트레스 관리, 분노상황 대처법, 학교폭력의 피해와 아픔,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시간을 배정한다. 필요시 담임교사, 상담교사와 집단상담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시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실, 보건실 게시물을 활용한다.

-학교폭력임이 확인되면 일단 학생을 안정시키고 더 이상의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학생들이 두려움을 심하게 나타낼 때는 교실에 보내지 말고 안정시킨 후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간단하게라도 진술서를 쓰도록 한다. 상처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더라도 담임교사와 부모에게 알리고, 병원 진료를 통하여 부상의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의 평택 모 여중에서 있었던 보건교사의 자살사건에서도 보여지듯이, 이후에 문제가 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는데다 혹 이후 다른 일로 부상을 입게 되었을 때 조차 이때의 부상으로 삼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원 및 후원 안내

회원이 되려면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권리이자 행복한 삶의 기본인 건강권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본연대의 뜻에 동의하시는 분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비는 매달 5천원씩 일정액을 내시면 정회원이 됩니다.

회비를 내려면

농협 209-12-582891 허 은 재

입금하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회원

본 교육 연대의 뜻에 동의하며 본회의 강좌 또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후원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회비 외에 행사를 위한 장소대여나

실무지원, 기타 정보, 자료소개 등의 후원도 환영합니다.

Tel) 사무국장 010-6665-2577, 회장 016-533-2532

